#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20. 11. 19(목), 14:00 ~ 17: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김봉렬, 김정희, 김창준, 윤균(오심), 이경미,

이찬희, 임영애, 전봉희, 정명섭, 천득염

(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 문 화 재 위 원 회

# 목 차

【심:	의사항】	
1	서울 이윤탁 한글영비 주변 동북선도시철도 건설공사	공개
2	서울 홍인지문 주변 광장 문화재 활용공간 조성(2차)	공개
3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 관광지 조성사업(2차)	공개
4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및 부지조성	공개
5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 수성당 개축공사	공개
6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 템플스테이 건립	공개
7	담양 개선사지 석등 주변 마을 진·출입도로 확포장공사(2차)	공개
8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주변 동암인법당 및 사주문 개축	공개
9	여주 창리 삼층석탑 주변 종교집회시설 부지조성(2차)	공개
10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주변 정비공사	공개
11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산사태 복구사업	공개
12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신규 및 조정(안)	공개
【검.	토사항】	
13	양산 통도사 유물 수장고 건립공사 설계 재검토	공개
14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주변 선원 및 법검당 리모델링 설계 검토	공개
【보	고사항】	
1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주변 온양 소로1-451호 확포장공사 - 강화 정수사 법당 주변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사업 - 홍천 희망리 삼층석탑 등 주변 홍천성당 주변정비(2차)	공개

- 구례 연곡사 동 승탑 주변 심우암 내 요사채 건립 및 석축 정비
-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주변 봉암사 안길 포장공사
- 영양 현리 삼층석탑 등 주변 지방도920호선 인도설치공사
- 영양 현리 삼층석탑 등 주변 창고시설 증축
- 장수향교 대성전 주변 건축물 수리
- 청송 대전사 보광전 주변 인법당, 부속건물 보수 및 주변정비 (변경허가)
- 청송 대전사 보광전 주변 가을철 성수기 사찰 판매점 운영
-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주변 농막용 가설건축물 축조
- 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등 주변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 고령 장기리 암각화 주변 문화관광안내소 설치
-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주변 농지 원상회복 및 유실수 식재
- 서산 개심사 대응전 주변 명부전(충남 문화재자료) 보수공사
-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숲가꾸기 산림사업
-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주변 삼성각 보수 및 주변정비 (변경허가)
-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주변 공중화장실 후면 옹벽 보강공사
- 안성 석남사 영산전 주변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주변 비닐하우스 및 가설건축물 신축
-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 등 주변 보현사 수각 신축
- 청양 장곡사 상 대응전 등 주변 설선당(충남 유형문화재) 해체보수 및 봉향각 보수공사
- 구례 연곡사 북 승탑 주변 공중화장실 및 안전난간 설치
- 여수 진남관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
-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주변 고소동 공영주차장 신축
- 영주 가흥동 마애여래삼존상 및 여래좌상 주변 영주 택지 가흥동주공아파트 골목 아스콘 덧씌우기 및 정비공사

#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0-12-001

# 1. 서울 이윤탁 한글영비 주변 동북선도시철도 건설공사

## 가. 제안사항

서울 노원구 소재 보물 제1524호「서울 이윤탁 한글영비」주변 동북선도시 철도 건설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동북선도시철도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 : 서울 이윤탁 한글영비
- 소 재 지 : 서울 노원구 하계1동 12번지
- ㅇ 지 정 일 : 2007. 09. 1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서울 노원구 하계동 266, 중계동 314-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31.4m
  - ㅇ 사업내용 : 도시철도 건설공사
    - 굴착길이 : L=230m (총연장 13.4km 중 허용기준 1구역내 230m 해당)
      - ※ 1구역내에서 지상굴착은 없으며, 발파지중터널 굴착

\* 예상 발파진동 0.171cm/sec (허용기준 0.2cm/sec)

- ㅇ 부결
  - 공법별 비교 검토, 상시진동 대책, 충분한 안전조치 등 보완 제시
-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 2. 서울 흥인지문 주변 광장 문화재 활용공간 조성(2차)

##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보물 제1호 「서울 흥인지문」주변 광장 문화재 활용 공간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광장 문화재 활용공간 조성을 시행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보호구역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08.20.) : 부결
  - 역사 문화 환경에 맞지 않음, 동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대안 마련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 : 서울 흥인지문
- ㅇ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9번지
- ㅇ 지 정 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ㅇ 사업위치 : 서울 종로구 창신동 463-2 외 2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문화재에서 60m

ㅇ 사업내용 : 문화재 활용공간 조성

구분	'20.08.20.(부결)	조정(안)
부지면적	919.74m²	900 m²
건축면적	170.4 m²	79.2 m²
건물높이	5.5m(지상1층)	4.6m(지상1층)
건물구조	전통목조건축물	전통목조건축물

- \* 기존 관리소(컨테이너) 철거 및 안내소, 화장실 용도 포함
  - ㅇ 활용프로그램
    - 보존 프로그램 : 답사, 서포터즈 프로그램
    - 활용 프로그램 : 무예24시, 마당놀이, 옹성 음악회, 옹성 위 미술관, 패션쇼
    - 체험 프로그램
    - ·흥인지문 알리기 체험: 옹성 쌓기 체험, 공포 쌓기 체험, 오간수문, 이간 수문 레고, 도미노 체험
    - •흥인지문 역사 체험: 전차타기, 복식체험, 전통공예체험

- ㅇ 조건부가결
  - 공간·디자인 계획 재검토 하되, 관계전문가 자문 받도록 함.
-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 3.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 관광지 조성사업(2차)

#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국보 제18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주변에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관광지 조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 및 허용기준 제3구역 "평지붕 최고 높이 8m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12m이하"에 해당됨.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08.20.):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 ㅇ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부석사로 345(부석면)
- ㅇ 지 정 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ㅇ 사업위치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301-1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00m

# ㅇ 전체사업 현황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금차)
사업 내용	국유림관리 사무소, 파고라 등	대형버스 주차장 85대, 수목식재 등	소형 주차장 674대, 야생초화원 등	의상마당, 부석사이야기길, 화엄마당, 야외무대, 기존도로 포장 등
사업 기간	2015. 12	2018. 4	2020. 4	2020. 12 ~ 2022. 7
사업 면적	651 m²	8,048 m²	16,791 m²	185,641 m²
허가 대상	대상아님			대상

# ㅇ 사업내용(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구분	'20.8.20.(부결)	금차
토목	- 토공 ・절 토: 1,700.0㎡ ・성 토: 4,900.0㎡ - 우수공 ・우수관(D250~700): 105.0m ・우수맨홀: 10개소 ・우수반이: 25개소 - 포장공 ・아스팔트 포장: 1,480.0㎡ ・아스팔트 덧씌우기: 760.0㎡ ・보도 포장: 890.0㎡ ・콘크리트 포장: 150.0㎡	- 포장공 ·아스팔트 재포장 : 5,100.0㎡ ·보도 재포장 : 760.0㎡

구분	'20.8.20.(부결)	금차
	- 시설물공	- 시설물공
	·전망데크 1식, 팔각정자 1개소,	· 화엄림 1식, 평의자 4식
	사각의자 14개소, 야외테이블 6개소	· 앉음벽 2식, 플랜터 2식
	· 앉음벽 1식, 플랜터 1식, 법계도	
	안내판 1개소, 미로공원 1식	
	· 수목보호판 11개소	
	- 포장공	- 포장공
	· 인조화강석블록포장 : 6,954.0㎡	·보행매트포장 : 1,510.0㎡
	·흙콘크리트포장 : 1,794.0㎡	·흙콘크리트포장 : 771.0㎡
조경	- 식재공	- 식재공
	·교목 : 왕벚나무, 소나무 외 16	• 교목류 : 366주
	수종 1,549주	· 관목 : 7,400주
	· 관목 : 개나리 외 6수종 10,440주	・초화류 : 6,000본
	·초화류 : 사사조릿대 4,000본	
	- 우수공	
	· 우수관(D150~250) : 249.0m	
	·집수정 : 33개소	
	· 우수받이 : 3개소	
	· 잔디수로 : 552.0m	

- ㅇ 조건부가결
  - 조경 단순화, 외부 주차장 시설 차폐 필요
-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 4.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및 부지조성

## 가. 제안사항

강원 철원군 소재 보물 제223호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주변에 단독 주택 신축 및 부지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 및 부지조성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8.06.21.):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8.12.20.) : 원안가결
- ※ '19년 3월 제1차 자체검토회의 결과(2019.03.13. / 변경허가):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11.21.) : 부결
  - 지형 변화(절토)가 확대되는 등 역사문화 경관 저해 우려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 :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 ㅇ 소 재 지 : 강원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423번지
- ㅇ 지 정 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강원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422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50m

ㅇ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및 부지조성

구 분	'18.12월 / 가결	'19.3월 (변경1차) / 부결	'19.12월 (변경2차) / 부결	금차 신청안
신청인	000	ㅇㅇㅇ 외 9인	ㅇㅇㅇ 외 9인	ㅇㅇㅇ 외 5인
대지면적	33,515 m²	좌동	좌동	좌동
사업면적	9,653 m²	10,420 m²	7,490 m²	7,900 m²
동수	6개동	10개동	10개동	단독주택 6개동 신축 (3동×85.05㎡ 3동×97.89㎡ 총 548.82㎡ /1층, 높이 6m)
절·성토	최대 4.8m (절토310㎡, 성토12,018㎡) (부지내도로 B=6.0m L=173.2m)	최대 11.74m	최대 4.99m	최대 5.0m (절토2,604㎡, 성토8,413㎡) (부지내도로 B=6.0m L=223.0m)
석축	식생블록 최대	식생블록 최대	자연석쌓기 최대	식생블록 최대
높이	2m	8m	9.9m	2m

- ㅇ 부결
  - 기존 승인안보다 절토량 과다
-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 5.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 수성당 개축공사

# 가. 제안사항

전남 강진군 소재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주변 수성당 개축 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수성당 개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 :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 ㅇ 소 재 지 : 전남 강진군 성전면 무위사로 308
- ㅇ 지 정 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ㅇ 사업위치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산177-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54m, 문화재에서 84m
  - ㅇ 사업내용 : 수성당 개축
    - 건축면적 : 70.29 m²
    - 규모 : 정면5칸, 측면2칸
    - 구조 : 한식목구조, 5량가, (공포) 소로수장
    - 지붕 : 맞배지붕, 홑처마, 막새마감, 한식기와(중와) 3겹잇기
    - 용도 : 요사채(천불전 관리사)

- ㅇ 조건부가결
  - 수성당의 지대 낮추고, 건물의 형태·입면계획 등 조정 필요(현지조사)
-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 6.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 템플스테이 건립

# 가. 제안사항

전남 강진군 소재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주변 템플스테이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강진 무위사 템플스테이 건립을 시행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 :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 ㅇ 소 재 지 : 전남 강진군 성전면 무위사로 308
  - ㅇ 지 정 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ㅇ 사업위치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1175-4, 1175-9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61m. 문화재에서 74m
  - ㅇ 사업내용 : 템플스테이 건립
    - 건축면적 : 82.62 m²
    - 규모 : 정면 5칸, 측면 2칸
    - 구조 : 한식목구조, 5량가, 민도리
    - 지붕 : 팔작지붕, 홑처마, 막새, 한식기와(중와) 3겹잇기

- ㅇ 보류
  - 현지조사 필요
-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보류 10명

# 7. 담양 개선사지 석등 주변 마을 진·출입도로 확포장공사(2차)

# 가. 제안사항

전남 담양군 소재 보물 제111호 「담양 개선사지 석등」주변 마을 진·출입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마을 진·출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05.21.):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 : 담양 개선사지 석등
- ㅇ 소 재 지 :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학선리 593-2
- ㅇ 지 정 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ㅇ 사업위치 :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학선리 590번지 일원

구분	'20.05.21.(부결)	조정(1안)	조정(2안)
문화재와 이격거리	보호구역 내	보호구역에서 10m~	보호구역에서 10m~
절성토량(사토량)	96 m³	730 m³	11,000 m³

구분	'20.05.21.(부결)	조정(1안)	조정(2안)
녹지훼손면적	180 m²	1,200 m²	5,500 m²
절토사면 높이	H=0~6.0m	H=8.0~10.0m	H=17.0~28.0m
지장분묘	없음	37]	117]
사업내용	총연장 L=483m, 2차로(폭 8m)로 개선	총연장 L=468m, 2차로(폭 8m)로 개선	총연장 L=528m, 2차로(폭 8m)로 개선

- ㅇ 조건부가결
  - 1안으로 하되 북측의 사찰터 추정지를 벗어나 우회하도록 함.
  - 지표조사 및 절토시 전문가 입회
-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 8.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주변 동암 인법당 및 사주문 개축

## 가. 제안사항

전남 곡성군 소재 보물 제273호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주변 동암 인법당 및 사주문 개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태안사 동암 인법당 및 사주문 개축을 시행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 :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 ㅇ 소 재 지 :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번지
  - ㅇ 지 정 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ㅇ 사업위치 :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산18-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57m, 문화재에서 85m
  - ㅇ 사업내용 : 인법당 및 사주문 개축
    - 건축면적 : 76.5m² / 지상 1층
    - 규모 : 정면 4칸, 측면 3칸 / 구조 : 한식목구조, 5량가
    - 지붕 : 팔작지붕, 맞배지붕

\*기존 건물현황 - 건축면적 : 90m² / 지상1층 - 구조 : 목구조, 조적조 / 지붕 : 골함석

- ㅇ 조건부가결
  - 건물형태 전문가 자문 검토
-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 9. 여주 창리 삼층석탑 주변 종교집회시설 부지조성(2차)

# 가. 제안사항

경기 여주시 소재 보물 제91호「여주 창리 삼층석탑」주변 종교집회시설 부지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종교집회시설 부지조성을 시행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 및 제3구역 "관계법령"에 해당됨.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10.15.): 부결
    - 역사 문화 환경 저해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 : 여주 창리 삼층석탑
- ㅇ 소 재 지 : 경기 여주시 상동 132번지
- ㅇ 지 정 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ㅇ 사업위치 : 경기 여주시 상동 65-18번지 외 3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78m

ㅇ 사업내용 : 종교집회시설 부지(농구장, 주차장 등) 조성

구분	'20.10.15.(부결)	조정(안)
자연석쌓기	50m(H=2.0m미만)	29m(H=1.5m미만)
돌쌓기	18m(H=3.0m)	_
흄관매설	50m(D300mm)	_
집수정	2개소(600*600)	1개소(600*600)

- ㅇ 원안가결
-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 10.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주변 정비공사

##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소재 보물 제995호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주변 축서사 주변정비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진입로 정비 및 하천 복개공사를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 :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 ㅇ 소 재 지 :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 739
- ㅇ 지 정 일 : 1989. 4. 10.
- (3) 신청내용
  - ㅇ 사업위치 :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 739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90m
  - ㅇ 사업내용 : 축서사 주변정비
    - 하천(세천) 복개 L=30m
    - 칼라아스콘 포장 A=1,420m², 콘크리트포장 4m²
    - 화강석 경계석 해체 L=52m, 설치 L=60m

- ㅇ 원안가결
-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 11.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산사태 복구사업

## 가. 제안사항

충남 논산시 소재 보물 제219호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산사태 복구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산사태 복구공사를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 및 허용기준 제2구역 "경사지붕 최고높이 7.5m 이하", 허용기준 제3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8m이하, 경사 지붕 최고높이 12m이하"에 해당됨.

- (1) 신 청 인 : ㅇㅇㅇ
- (2) 대상문화재 :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 ㅇ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108번지
  - ㅇ 지 정 일 : 1963. 1. 21.
- (3) 신청내용
  - ㅇ 사업위치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산35번지 외 13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로부터 103m
  - ㅇ 사업내용
    - 사방댐 설치: 1개소(상장 21m, 하장 17m, 유효고 3m)
    - 큰돌바닥막이: 6개소(B=2m, H=1~2m)

- 진입도로개설: 191m(B=3.5m)

# 라. 현지조사의견(2020.11.16. / 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 산사태 재해복구 사업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나, 사방댐과 도로개설로 인한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지표조사를 선행토록 함이 좋겠음.

# 마. 의결사항

- ㅇ 원안가결
-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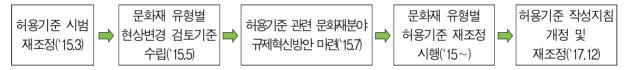
# 12.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신규 및 조정(안)

## 가. 제안사유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신규 및 조정 (안)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검토결과(2020.10.15.): 조건부가결
  - 사찰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나. 주요내용

- (1) 추진경위
  - ㅇ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방안」('15.7)에 따른 허용기준 합리적 조정



#### ※ 최근 5년간 허용기준 조정건수

년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건수	336건	46건	7건	166건	60건	57건

- ㅇ 허용기준 작성근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훈령 제449호, '17.12.18)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보존정책과-419(2020.1.21.))

#### ※ 재조정 공통원칙

- 실제로 개별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행위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인 '원지형보존', '신축불가 지역'을 '<u>개별심의 구역'</u>으로 변경(제1구역)
- '15년 이전 허용기준 중 문화재 명칭변경 미반영 건 수정반영
- 경관 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칠 영향이 없는 지역은 도시계획 등 타 법령 적용

-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2055호 진안 수선루 등 62건
  - (신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등에 따른 허용기준 마련 (진안 수선루 1건)
  - (수정) 문화재명칭 및 범례표 수정 등 경미한 사항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등 57건)
  - (조정) 지형 등을 고려한 허용기준 완화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 등 4건)

#### (3) 향후계획

- 국보·보물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관리체계 구축
- 매년 지자체 수요조사로 조정대상 선정
  - ·기준 설정 후 10년이상 도래, 보물 승격에 따른 확대, 원위치 아닌 문화재 주변 재조정 필요. 다수 민원제기 대상 등
- 전문가 현지조사 및 자문회의(소위원회) 실시, 문화재위원회 검토, 관련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

#### 다. 의결사항

- 0 원안가결
-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 1] 허용기준 신규 및 조정(안) 1부.

[붙임 2] 허용기준 신규 1건

[붙임 3] 허용기준 수정 57건

[붙임 4] 허용기준 조정 4건

[붙임 1] 허용기준 신규 및 조정(안)

۵ جا	지정	9	허용기준		
유형	번호	문화재명	지형도면	범례 班	
신 <sup>-</sup>	7	1건			
보물	2055	진안 수선루	신규	신규	
수:	정	57건			
국보	7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ㅇ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3구역 및 공통사항 조정	
국보	47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보물	380	하동 쌍계사 승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2구역(층수삭제),	
보물	500	하동 쌍계사 대웅전		공통사항 조정	
국보	48-1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국보	144	영암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보물	1283	영암 월출산 용암사지 삼층석탑	○ 문화재 시청청청 구청 	공통사항 조정	
국보	147	울주 천전리 각석	ㅇ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국보	307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ㅇ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국보	315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보물	137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			
보물	169	문경 봉암사 삼층석탑	·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보물	171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	으 교육/제 /시/항경/항 丁/항 	공통사항 조정	
보물	172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보물	1574	문경 봉암사 극락전			

^ <del>~</del> i	지정	n si si si	허용기준	
유형	번호	문화재명	지형도면	범례 班
보물	112	광양 중흥산성 삼층석탑	ㅇ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117	상주 화달리 삼층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193	청도 운문사 금당 앞 석등		
보물	316	청도 운문사 원응국사비		
보물	317	청도 운문사 석조여래좌상	· ·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보물	318	청도 운문사 석조사천왕상	O 군와재 시성명성 구성	공통사항 조정
보물	678	청도 운문사 동·서 삼층석탑		
보물	835	청도 운문사 대응보전		
국보	84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ㅇ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국보	130	구미 죽장리 오층석탑	ㅇ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10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 ○ 변경없음	공통사항 조정 등
보물	615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 记分財百	0.00,120,00
보물	18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ㅇ 변경없음	1구역(원지형보존→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143	서산 개심사 대웅전	ㅇ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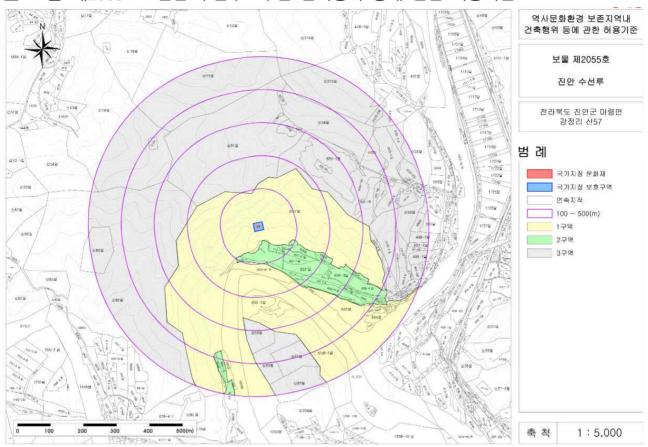
۵ =۱	이 된 기정 미리 제 · · · · · · · · · · · · · · · · · ·			
유형	번호	문화재명	지형도면	범례 표
보물	162	청양 장곡사 상 대응전 청양 장곡사 하 대응전	ㅇ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188	의성 관덕리 삼층석탑	ㅇ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189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ㅇ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3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296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보살좌상		
보물	297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서 삼층석탑	ㅇ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307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372	진주 용암사지 승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373 472	의령 보천사지 삼층석탑 의령 보천사지 승탑	·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보존 → 개별심의), 2·3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407	천안 삼태리 마애여래입상	ㅇ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3 등사영 조건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429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	ㅇ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467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ㅇ 변경없음	1구역(원지형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0 원 지정		п ы л-1	허용기준		
유형	번호	문화재명	지형도면	범례 표	
보물	470	구미 도리사 석탑	ㅇ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504	영광 신천리 삼층석탑	ㅇ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655	칠곡 노석리 마애불상군	ㅇ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675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보물	676	영천 화남리 석조여래좌상	○ 문화세 시성당성 구성   	2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804	순천 정혜사 대응전	ㅇ 변경없음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831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	ㅇ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832	영주 성혈사 나한전	ㅇ 변경없음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907	경주 남사리 삼층석탑	ㅇ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943	보성 우천리 삼층석탑	ㅇ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945	순천 금둔사지 삼층석탑		1구역(원지형 보존	
보물	946	순천 금둔사지 석조불비상	· O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1115	보성 봉천리 오층석탑	ㅇ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3,4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유형	지정	므칭 케 由	허용기준	
ш.я	번호	문화재명	지형도면	범례 班
보물	1293	공주 계룡산 중악단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3,4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1942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ㅇ 변경없음	공통사항 조정
조정		4건		
보물	197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	ㅇ 제1,2,3,4구역 일부 조정	1구역(신축불가 → 개별심의), 2,3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376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ㅇ 제2구역과 제3구역 통합 및 완화	3구역 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584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ㅇ 제1구역→제3구역 일부 완화	공통사항 조정
보물	1372	함평 고막천 석교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 제1구역→제3구역 일부 완화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 [붙임 2] 허용기준 신규 1건

# ■ 보물 제2055호 "진안 수선루"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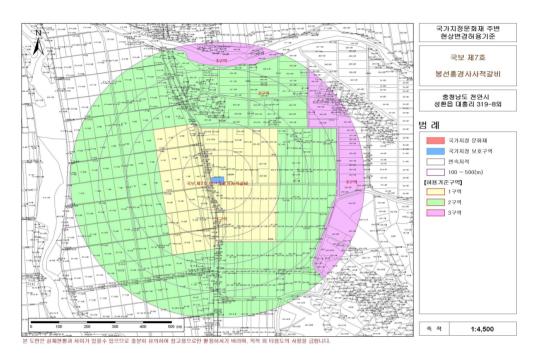


# 【 범례 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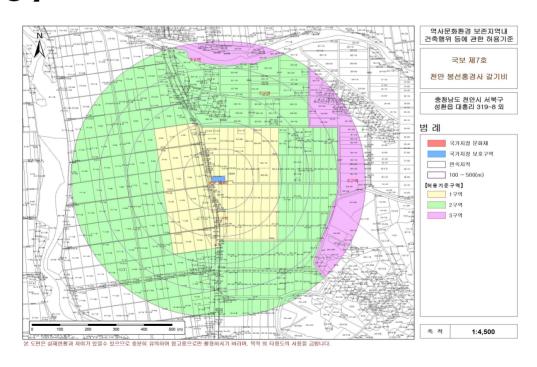
구 분	허용기준			
T ਦ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이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이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이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m²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이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이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이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이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이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이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붙임 3] 허용기준 수정 57건

# ■ 국보 제7호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 【변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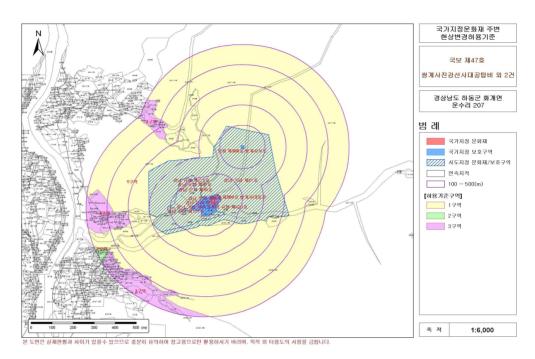
7 13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 최고높이 8m(2층)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이하	
3구역	ㅇ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름		
	○ 2구역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 입회 하에 터	파기 실시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	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	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	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	
	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7 E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	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공 통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사 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 , , , , , , , , , , , , , , , , , ,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ㅈ	, · · · · · · · · · · · · · · · · · · ·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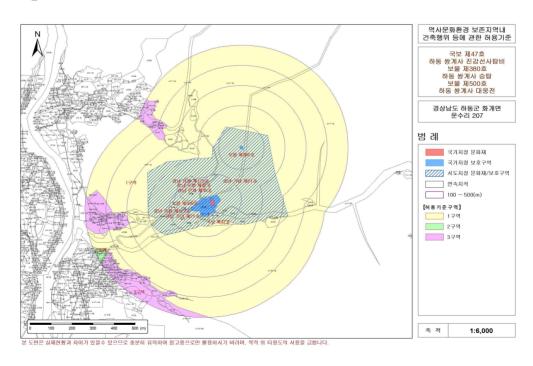
# 【 범례 표 (변경) 】

구분	허용기준				
一七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7 ഷ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	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3구역	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자	H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2구역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 입회 하에 터	파기 실시			
	o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	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m'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	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 , , , , , , , , , , , , , , , , , ,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	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공 통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시	, ·			
사 항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	는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	],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1.5			
	O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				
		, – – , , – ,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	첫 학교 개월입러			

■ 국보 제47호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보물 제380호 "하동 쌍계사 승탑", 보물 제500호 "하동 쌍계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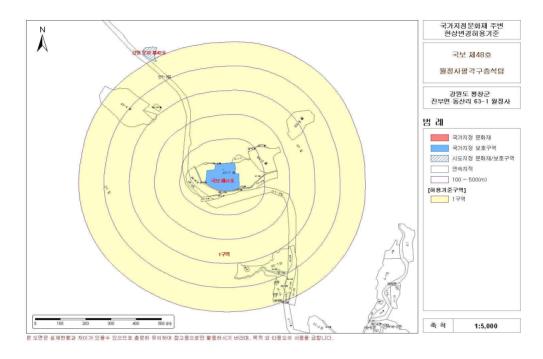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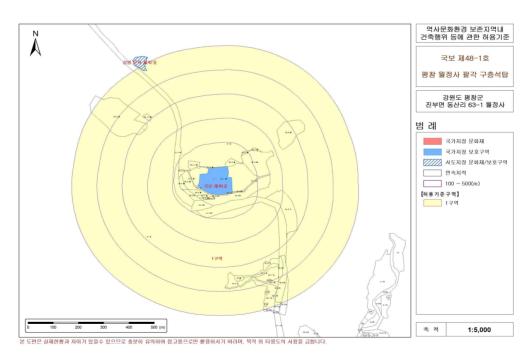
	· · · · · · · · · · · · · · · · · · ·	<b>コ ス</b>	
구 분	허 용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
제1구역	o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니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지	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를	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	·보수 가능(쌍계사 경내는 제외)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	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	그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7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원	색, 밤색 등). 원색
공통사항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u> </u>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		물처리시설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	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	-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	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	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u> </u>		
구 분	허용기준		비고
1 L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포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110 T A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5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3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	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o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	위 <b>내에서 개·보수 가능</b> (쌍계사 경니	H는 제외)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는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	기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	축면적 330m² 초
		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n	
	이하인 구역에 한함)	. , , _ , _ , _ , _ , _ , _ , _ , _ , _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	색 밤색 등). 워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1, 11 1 07. 12 1
공통사항		^ , , , , , , , , , , , , , , , , ,	법) 동문 및 신문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	27, 02 5 12
	, ,	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오벼이 바새치느
		5/14, 표이 Jill 이용의 합년, 즉독, 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h^r안 것을 포암.
	o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국보 제48-1호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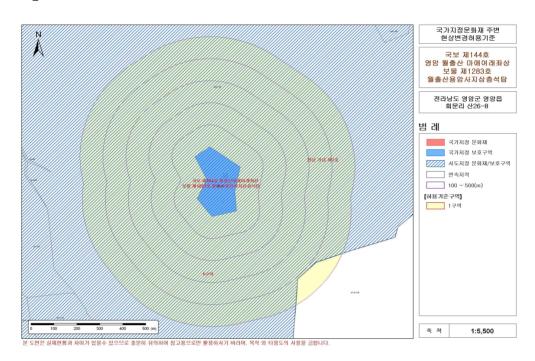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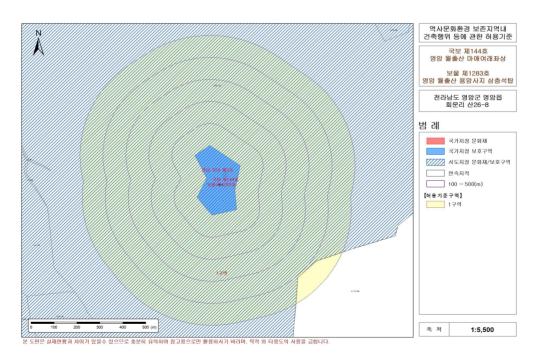
	· - · ·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 ਹ ਦ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H  <del>1</del> L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	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n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 경사지붕 12m(2층)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	E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공통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ェ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	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
, 0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	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f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탁	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고	<b>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b>	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_ ,,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 개별심의				
	o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r	n,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n	n,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공통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	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	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국보 제144호 "영암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보물 제1283호 "영암 월출산 용암사지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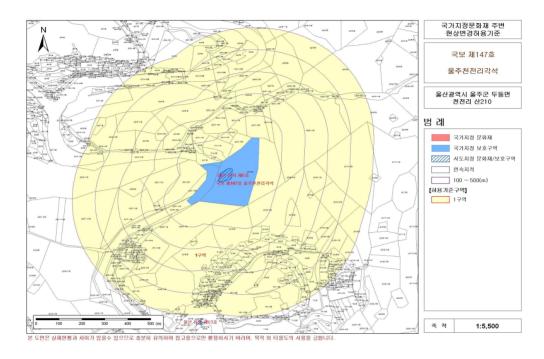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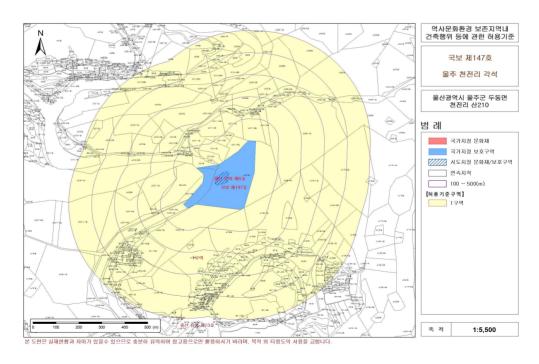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ਮੀ ਤ
ੀ ਦ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b>공통사항</b>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구 분	허용기준		, 1)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개별심의		
공통사항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지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으이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개별 심의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 3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에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으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하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해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사지붕 12m 색 등). 원색 물 및 식물 이 발생하는 법에 따름)

#### ■ 국보 제147호 "울주 천전리 각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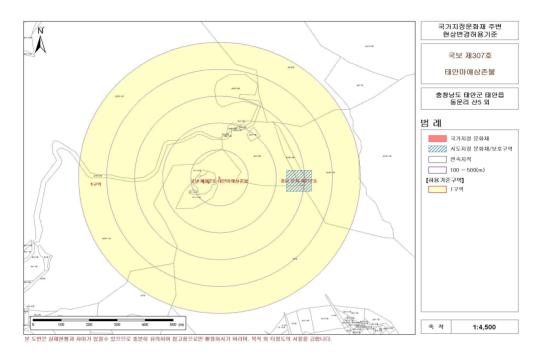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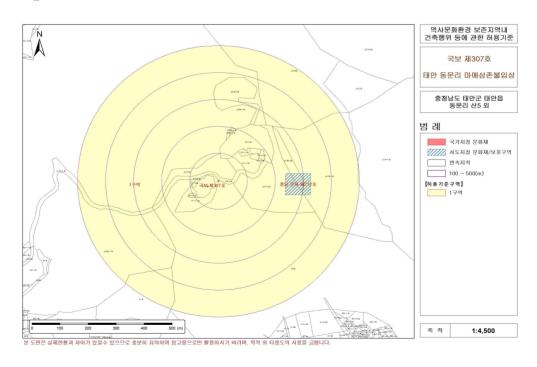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TE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N LL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ul> <li>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li> <li>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li> <li>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li> </ul>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11
제1구역	ㅇ 개별심의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봉 8m, 경사지봉 12m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이하인 (F). 원색 식물 관 하는 경 름)

#### ■ 국보 제307호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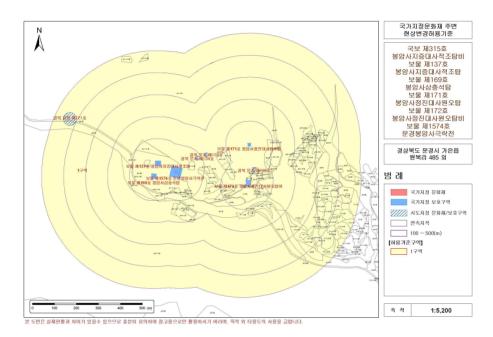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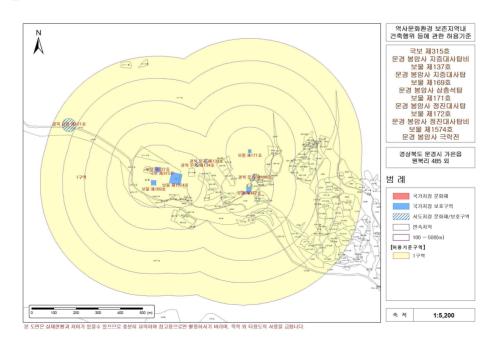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ਮੀ ਹ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물은 개·보수 가능 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  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별심의

   구 분	허용기준		HJ T
丁七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여	O 개별심의		
공통사항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 이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 런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	물은 개별 심의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식 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사지붕 12m 이하인 내, 밤색 등). 원색 계 (), 동물 및 식물 관 용벽이 발생하는 경 건축법에 따름)

■ 국보 제315호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보물 제137호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 탑", 보물 제169호 "문경 봉암사 삼층석탑", 보물 제171호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 탑", 보물 제172호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보물 제1574호 "문경 봉암사 극 락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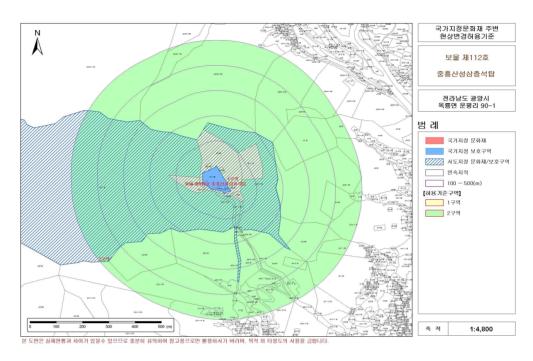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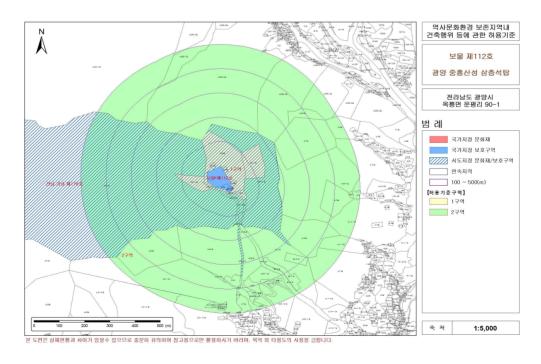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ਮੀਰ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ul><li>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li><li>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히</li><li>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li></ul>		

л н	허 용	기 준	nj –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개별심의		
공통사항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 런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	물은 개별 심의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나는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한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작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경상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중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사지붕 12m 이하인 내, 밤색 등). 원색 계 인, 동물 및 식물 관 응벽이 발생하는 경 건축법에 따름)

#### ■ 보물 제112호 "광양 중흥산성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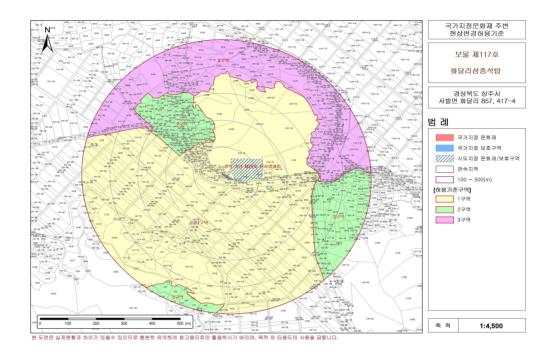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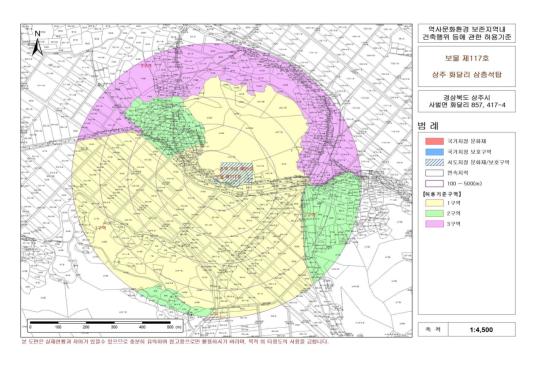


7 19	허 용 기 준		ען די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 비고
제1구역	o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지방기념물 제178호 "광양중홍산성"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사항	○지방기념물 제178호 "광양중흥산성" 허용기준에 따름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m'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봉 12m(2 등). 원색 리시설 등  :생하는 경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 41-72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지방기념물 제178호 "광양중흥산성" :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사항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이 의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	개별 심의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기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지붕 12m 등). 원색 남 및 식물 생하는 경 따름)

# ■ 보물 제117호 "상주 화달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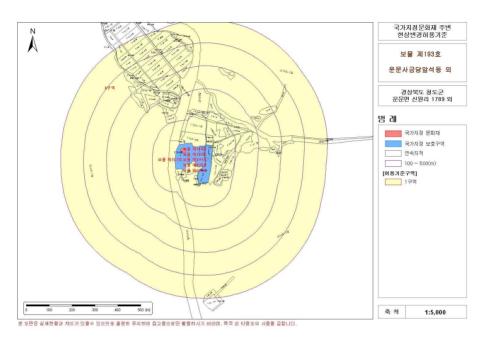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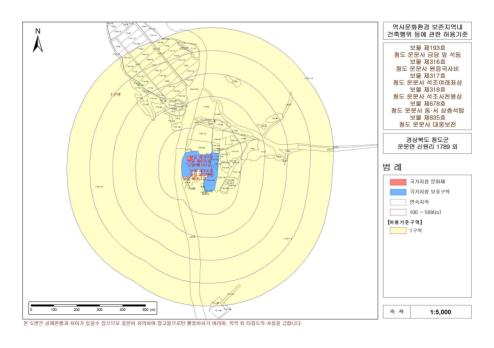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1 2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 41-74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지	나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フ	州・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점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	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도	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	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 공통사항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u> </u>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		기물처리시설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등	용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념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중	능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 -		
구 분	허용기준		비고
l T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H1-12-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ചാചപ്പ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
제3구역	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	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	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ㅇ	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	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
	인 구역에 한함)	·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	색, 밤색 등). 원색
7535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		, , , , - , - ,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워순	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	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	_,,
		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	-벽이 발생하는 경
		: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 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 c , c — d.
	o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1 66 7 106 71661	

■ 보물 제193호 "청도 운문사 금당 앞 석등", 보물 제316호 "청도 운문사 원응국사 비", 보물 제317호 "청도 운문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318호 "청도 운문사 석조 사천왕상", 보물 제678호 "청도 운문사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835호 "청도 운문사 다음보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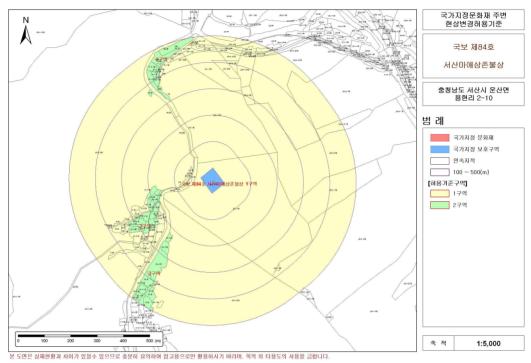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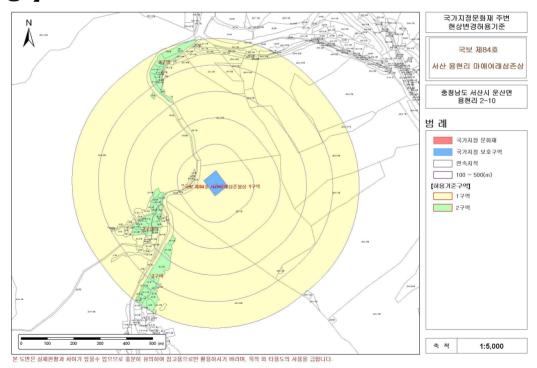


7. 13	허 - {	· 기 준	บไร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	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r	n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3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	
	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	
	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	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공통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회	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4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	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л н	허용기준	มโ 🗝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 개별심의				
	o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r	n,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ı,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공통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기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4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국보 제84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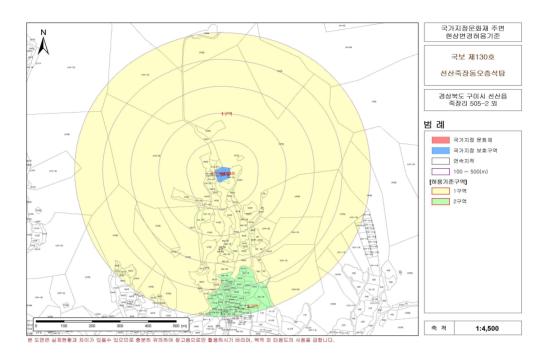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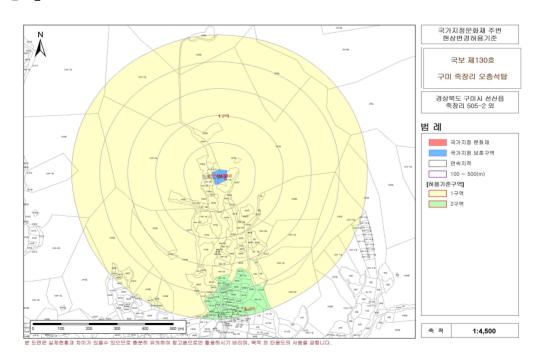


- 1	허용기준		-2-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공통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2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으 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는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는 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	은 개별심의.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는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1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붕 12m(2층) 이 색 등). 원색 계 처리시설 등 이 발생하는 경우 름)

	허용기준		
구 분	· -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	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및	코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ㄴ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m'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
고트가치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	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여	기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	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		
	•		

## ■ 국보 제130호 "구미 죽장리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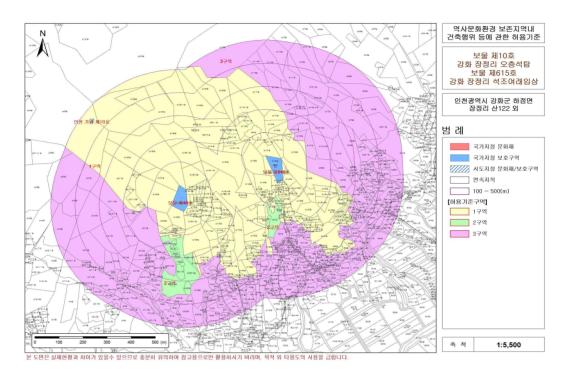


7 H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비고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공통사항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변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7	은 개별심의.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식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라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차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생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12m(2층) 이   등). 원색 계  리시설 등 이 발생하는 경우

7 13	허용기준		-21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비고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물	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험	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1 131 4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	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특	루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m'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3	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	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빔	·색 등). 원색 계
고토기원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경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0호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보물 제615호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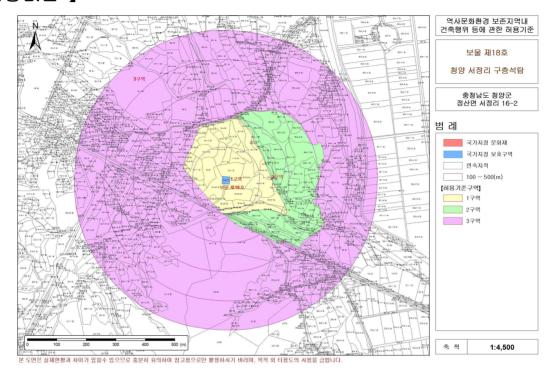
#### 【 변경없음 】



구 분	허 용	기 준	מן דו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 사항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 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된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위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개별 심의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박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내,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n 이하인 구역 밤색 등). 원색 및 식물 관련 발생하는 경우 다름)

구 분	허 용 기 준		v) -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del>공통</del> 사항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 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된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위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개별 심의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n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투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구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기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미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n 이하인 구역 밤색 등). 원색 및 식물 관련 발생하는 경우 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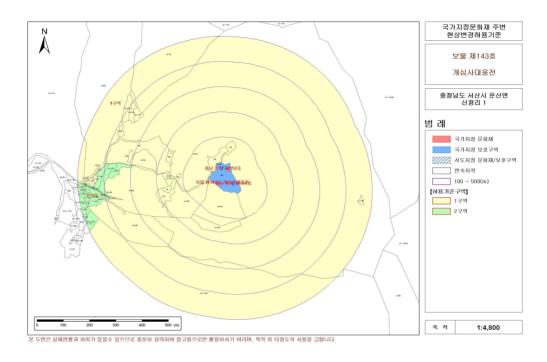
# ■ 보물 제18호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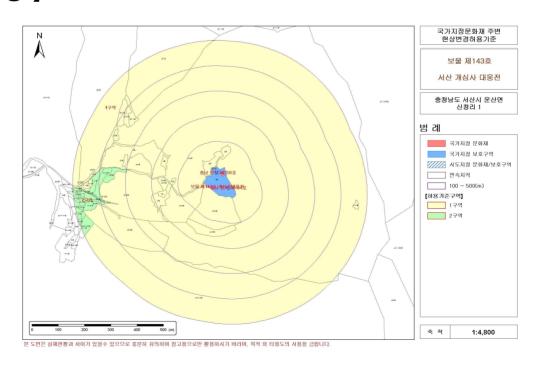


구분	형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제2구역	○원지형 보존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	· ·
공통 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m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재병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이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층) 이하인 구 등). 원색 계열 시설 등 이와 생하는 경우는

구 분	허용기준		비고
' "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日本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	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ᆌᄼᄀᄼᆑ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
제4구역	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	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형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	1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25 (2)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	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이	
		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		
	o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		
	, , , , , , , , , , , , , , , , , , , ,		

## ■ 보물 제143호 "서산 개심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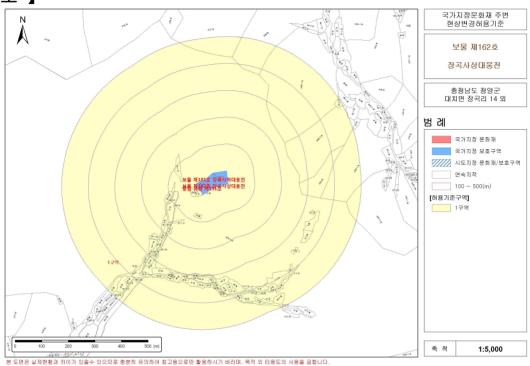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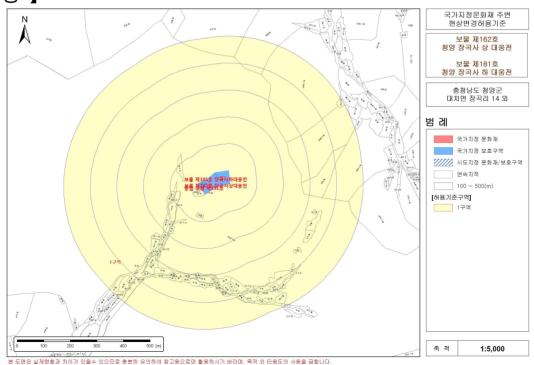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원지형 보존	<u>                                     </u>	
제2구역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공통사항	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러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 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	· 개별심의.    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m  -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  -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사  - 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 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2층) 이하인 등). 원색 계 시설 등 이와 생하는 경우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포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 이하	
공통사항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 이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된 런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지	개별 심의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라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네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이 1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12m 이하인 등). 원색 계 · 및 식물 관 발생하는 경   따름)

■ 보물 제162호 "청양 장곡사 상 대웅전", 보물 제181호 "청양 장곡사 하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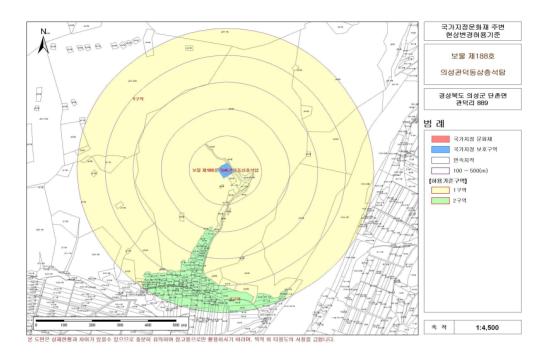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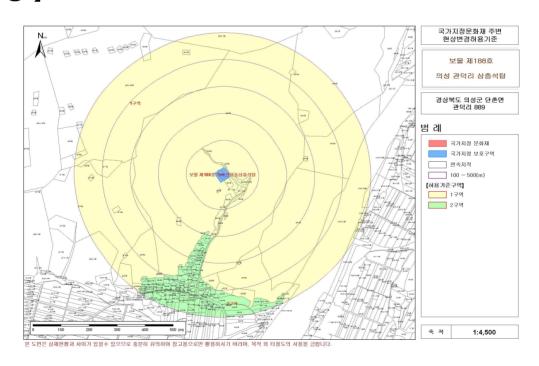


7. 13	허용기준		מן די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리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수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는 개별심의.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m 기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 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세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1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2m(2층) 이 등). 원색 계 ]시설 등 이 발생하는 경 )

<u> </u>	I (LO) 1		
구 분	허 용 기 준		H) =7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개별심의		
공통사항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 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 이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여 으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개별 심의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 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이다,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12m 이하 등). 원색 계 물 및 식물 이 발생하는 넘에 따름)

# ■ 보물 제188호 "의성 관덕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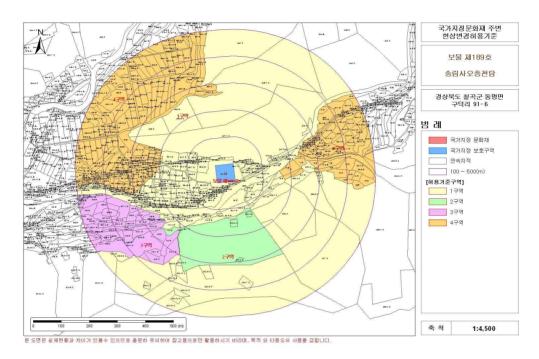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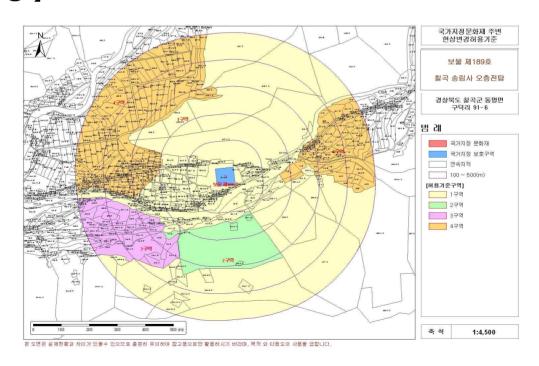


7 H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O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공통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7 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러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정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청	개별심의. 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m ]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 되지 않는 재료 권장. 세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들 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층) 이하인 구 등). 원색 계열  시설 등 이와 생하는 경우는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177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월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함.	
공통사항	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m²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 보물 제189호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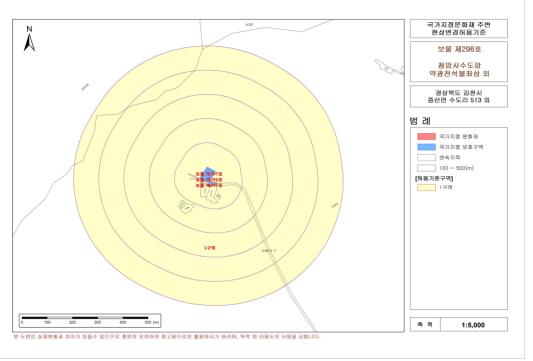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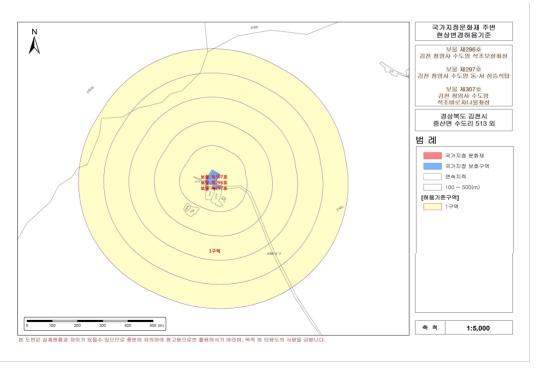
7 13	허용기준		บไ ¬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_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_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m²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 , <u>-</u>		
구 분	허용기준		비고
1 12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41-14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_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_	ㅇ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b>△114</b> 〒 〒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목	틸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니	l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	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 , , , , , , , , , , , , , , , , ,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		
그무지의	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l	ł,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	발생하는 경
		의,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정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		

■ 보물 제296호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보살좌상", 보물 제297호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307호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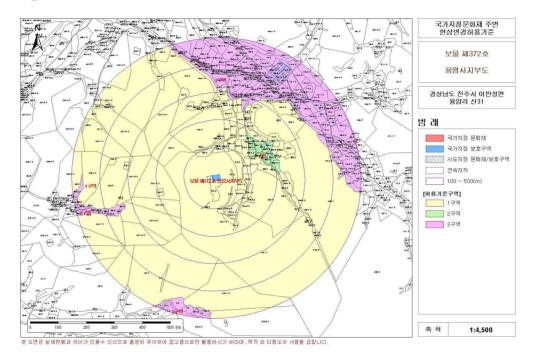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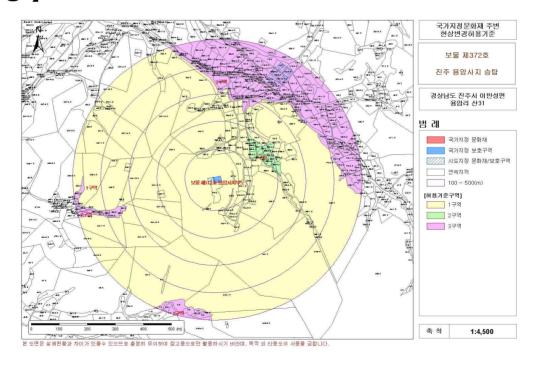


7 13	허 용	- 기 준	מן די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원지형 보존		
공통 사항	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	상 건물은 개별심의.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경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기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로 생물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된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외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 ,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 따름) 나 유사한 것을 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I 正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H 17	
제1구역	o개별심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m' 초고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 사항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 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보물 제372호 "진주 용암사지 승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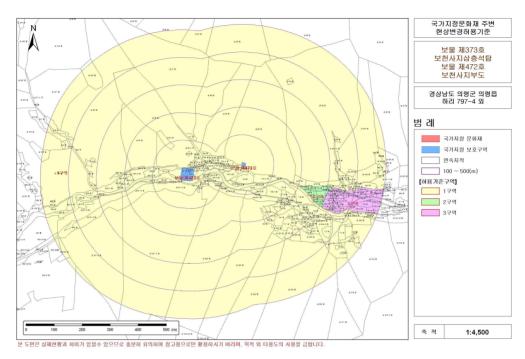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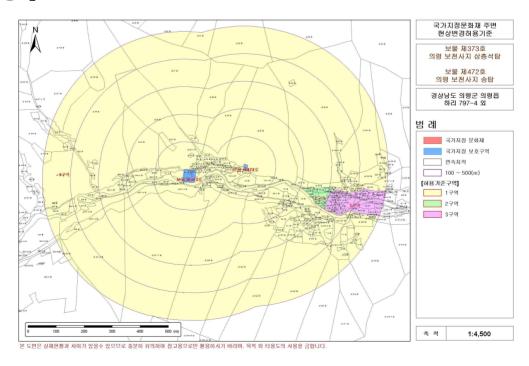
	=)	-1 Z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1 4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71-12-
제1구역	o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	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	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여	경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	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	330m² 초과
	, , , , , , , , , , , , , , , , , , , ,	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분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 등). 원색
공통사항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03/13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	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빝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del>[-</del>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기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	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	l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u> </u>	(20/1		
구 분	•	기 준	비고
, =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	l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ച്ചാചൻ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 지방자치
제3구역	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법	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m'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O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고두기위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	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		

#### ■ 보물 제373호 "의령 보천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472호 "의령 보천사지 승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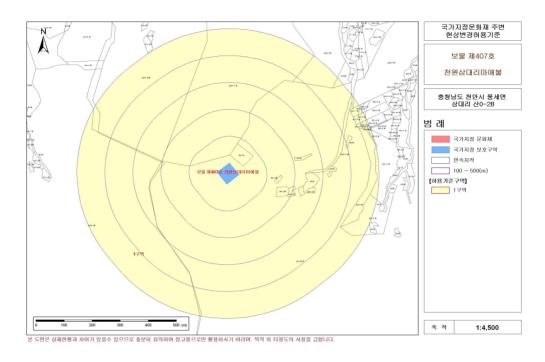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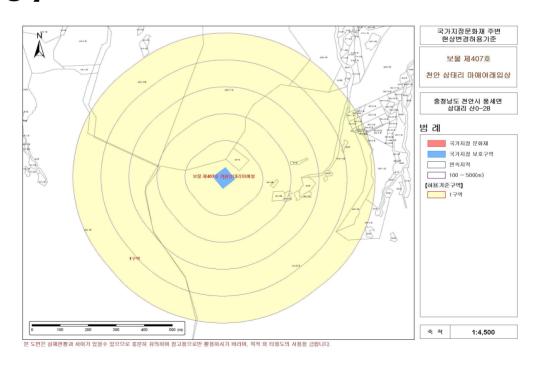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원지형 보존	0 1 10 (0 10 10)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
제3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
공통사항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은 개별심의.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분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통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라데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차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별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경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l 12m(2층) l 등). 원색 l리시설 등 날생하는 경

구분 하용기준	비고		
T = 1-14 = 10.14(0.40 -1.11)			
' <sup>''</sup> 경사지붕(3:10 이상)	H1-17-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및	포는 지방자치		
시4 기 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	!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sup>2</sup>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기통기회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이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	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학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보물 제407호 "천안 삼태리 마애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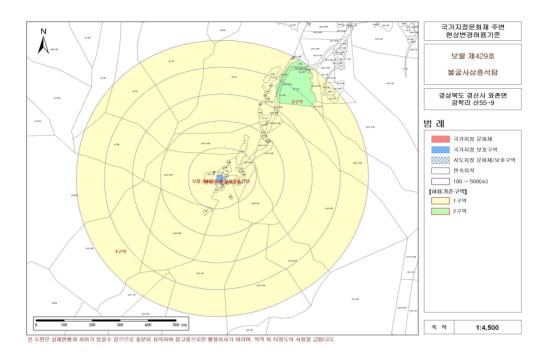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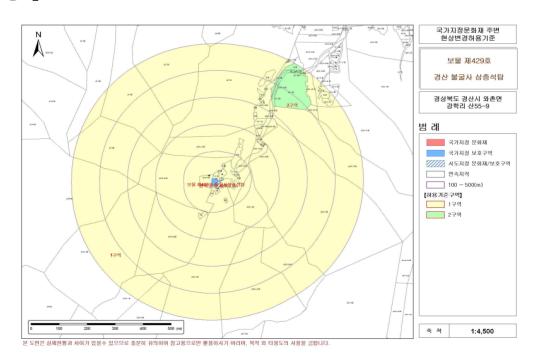


그 H.	허 용 기 준	:	비고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갶
제1구역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sup>부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sup>	

   구 분	허용기준		비고
1 E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 11 11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호 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 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	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 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 록 함.	(도시계획 또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기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호 봉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판 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기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니 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호 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정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	개별 심의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남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한함)  색상 권장(예 : 지붕 색/ 배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편시설(고물상, 폐기물 :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나층의 절토는 제외, 지변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준으로 평지 상 - 회색, 밤 등 재료 권장. 처분시설), 동 시설은 개별 Ⅰ, 석축, 옹벽 난선의 높이산 - 이와 유사한

# ■ 보물 제429호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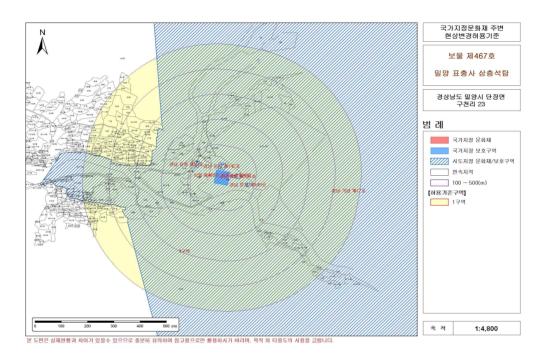




7 13	허 용	기 준	ען די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o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14m(4층) 이하	ㅇ최고높이 18m(4층) 이하	
공통사항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다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은 개별심의.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터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경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12m(2층) 이 등). 원색 계 리시설 등 이 발생하는 경

구 분	허 용 기 준		ען יי
। स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공통사항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 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보 이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	는 개별 심의 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 네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는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용 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하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지붕 12m 이하 색 등). 원색 계 동물 및 식물 -벽이 발생하는 !축법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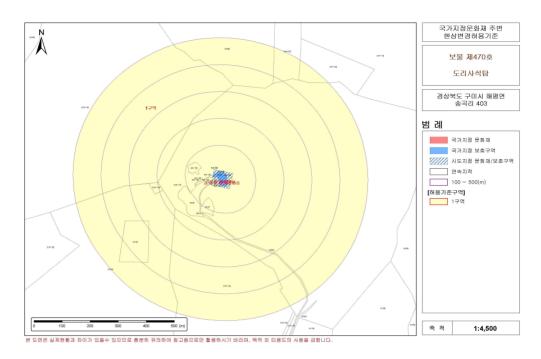
# ■ 보물 제467호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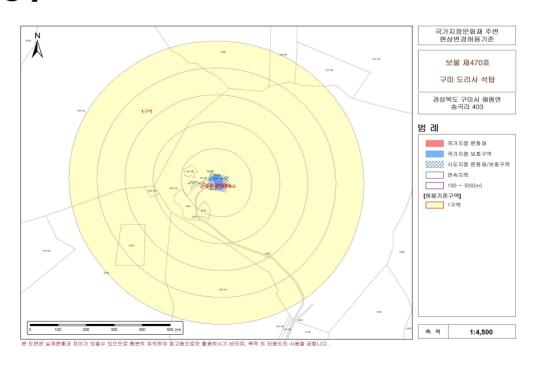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n  12
제1구역	o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표충사 경내는 제외)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하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단, 대지에 한하며 그밖에 지목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록 이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	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호 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당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축면적 330㎡ 초과 사지붕 12m 이하 회색, 밤색 등). 원 철), 동물 및 식물 왕벽이 발생하는 건축법에 따름)

# ■ 보물 제470호 "구미 도리사 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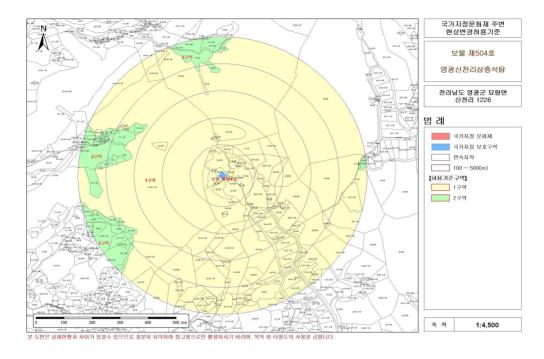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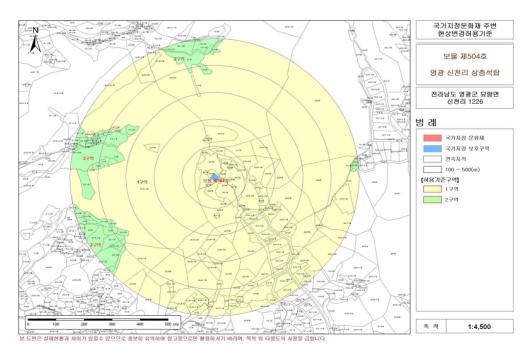


7 H	허용기준		n) =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역 이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는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록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성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	개별심의.  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데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들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나,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2차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경사지붕 색 등). 원 물처리시설 발생하는 따름)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1 &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H 175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	
/11/2   7	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여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 재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니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		
	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니	ł,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	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탁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		

# ■ 보물 제504호 "영광 신천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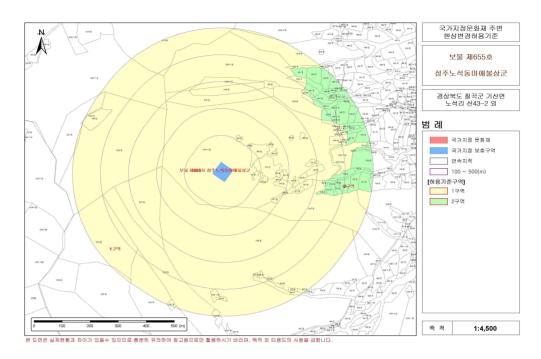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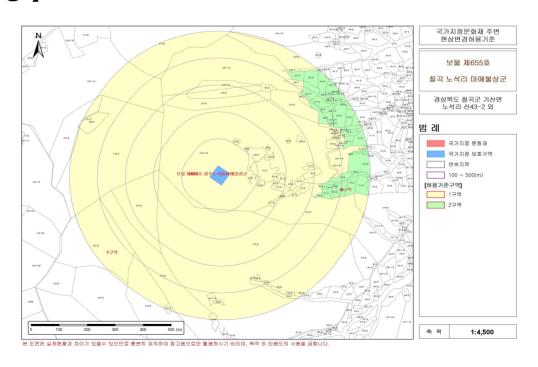


	(84)		
그ㅂ	허 용	기 준	มา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원지형 보존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	: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	물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	<u>수</u>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	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호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여	]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O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고두기위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	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히	-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성	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을 포함.
	· · · · · · · · · · · · · · · · · · ·		•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1 1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71-12-
제1구역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107 A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	자치단체
세2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	]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	30m'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sup>+</sup>	등) 워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민 신문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7 72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되느 거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는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보물 제655호 "칠곡 노석리 마애불상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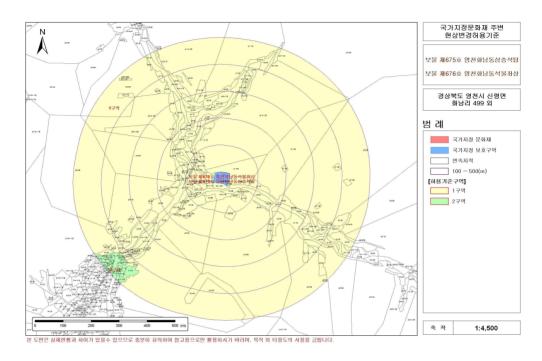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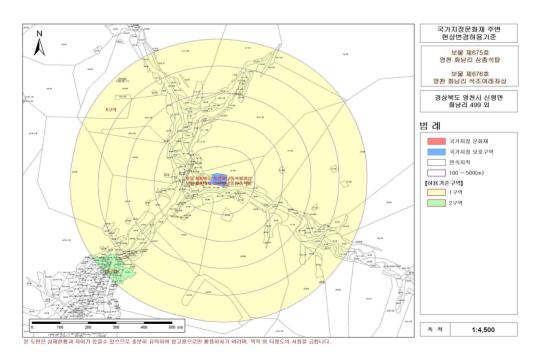
	· · · · ·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 स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여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	별심의. 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	
공통사항	증)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	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되지 않는 재료 권장.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등). 원색 기시설 등 발생하는 름)

L 급네 표 (단경/ <b>J</b>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세이트릭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기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	축면적 330m²
		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 , , , ,
		;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7505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	•	
공통사항		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 동물 및 식
		r)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 , , , , , , , , , , , , , , , , , ,
	,	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	벽이 발생하는
		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시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 , , , , , , , , , , , , , , , , , , ,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 보물 제675호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보물 제676호 "영천 화남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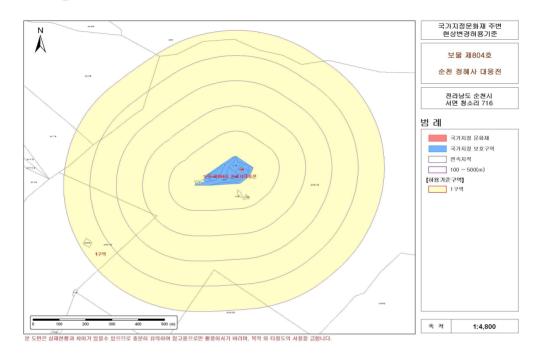


7. 13	허 용	기 준	비고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 1177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_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	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	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도	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	<del>[</del> 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m² 초과 건물
	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o 구역에 한함)	]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75.75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 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	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색 등). 원색 계열
공통사항		스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E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 · · · · · · · · · · · · · · · · ·	는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현	·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구 분	허 용	기 준	บไร
। ਦ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_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3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	는 지방자치단체
711317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	<b>ት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b>	!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	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	면적 330m'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	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	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
고토기취	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	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ㅇ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기	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	벽이 발생하는 경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 가합,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현	
	O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		·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보물 제804호 "순천 정혜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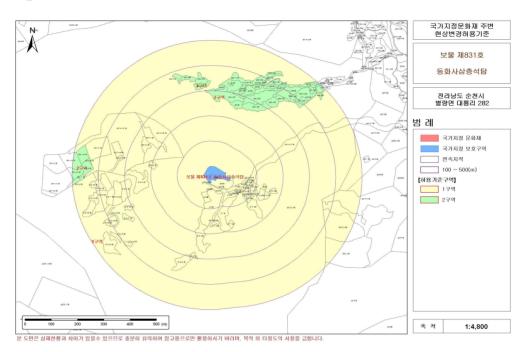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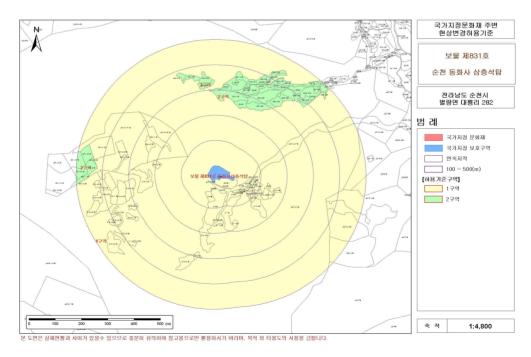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ਸ਼ੀ ਹ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 t)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	· · ·
공통사항	m'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병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정으는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기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법에 따름)	: 개별 심의  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당  [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사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당)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내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병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 당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시	, 경사지 색, 밤색 동물 및 이 발생 은 건축

#### ■ 보물 제831호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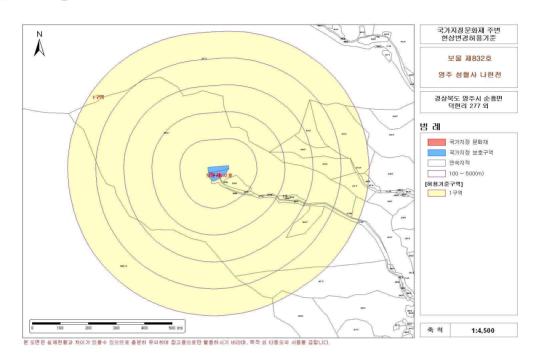




	(01)		
구 분	허용기준		H) =
I L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원지형 보존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	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	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점	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	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	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	330m²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	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퉁	분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 등). 원색
고토기원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	·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차	H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	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별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	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기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형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선	<u>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u>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O개별심의	0.4.48 (0.10 +8)	
7-11-1 -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	버 드 과려 버려에 따라 처리	
	l		. 7] 3] r]. 3]
제2구역		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	
		ll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7	'[순을 재
	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니	H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	330m²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	]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0 10 5 0 1	, 0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	두) <b>원</b> 새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팀		0/1 11
고토기원			ם וג ום
공통사항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여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니	ł,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
	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정		
	O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		
	<u>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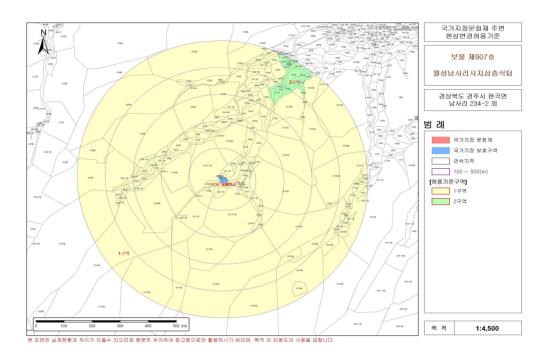
# ■ 보물 제832호 "영주 성혈사 나한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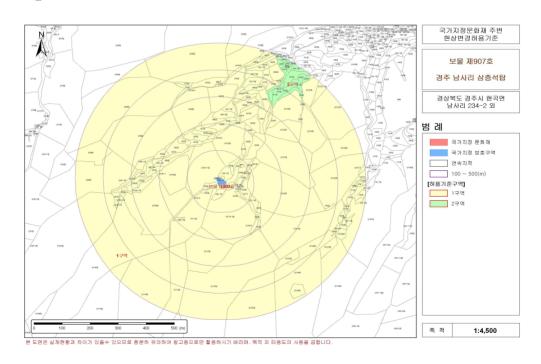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o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현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개별심의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r 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용 봉 8m, 경사지봉 12m 이하인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임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사한 것을 포함.	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구역에 한함) 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4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현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답,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25m, 건축면 준으로 평지 색상 - 회색, 이 않는 재료 처분시설), 한 시설은 개 한 시설은 개 선의 높이산

# ■ 보물 제907호 "경주 남사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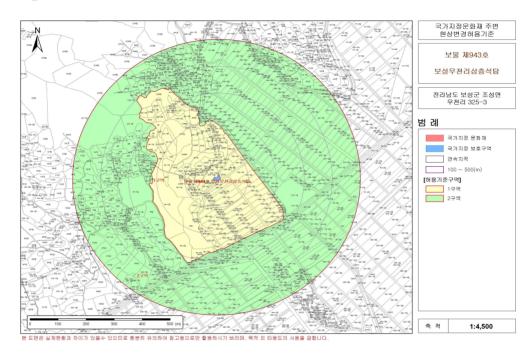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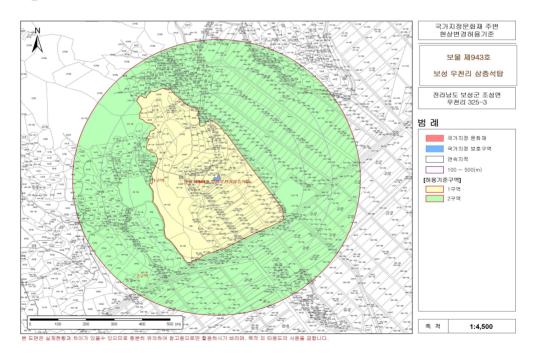
	, - , <u>-</u>		
구 분	허 <del>용</del>	기 준	비고
। स	평지붕	경사지붕(3:10)	1 11 11
제1구역	o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	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	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	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	그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7	병사지붕 12m(2
	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	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워색
,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1 / 0// 2 /
공통사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u>△</u>		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_ , ,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	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	-벽이 발생하는
		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	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첫		·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1 (LO) 1		
구 분	허용기준		비고
l T	평지붕	경사지붕(3:10)	H1-14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 , , , , , , , , , , , , , , , , , , ,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1017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	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	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여	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닝	է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고든기원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여	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혼	·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	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	벽이 발생하는
		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 , , , , , , , , , , , , , , , , , , ,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L			

## ■ 보물 제943호 "보성 우천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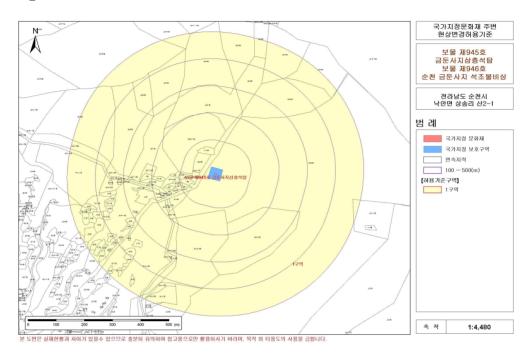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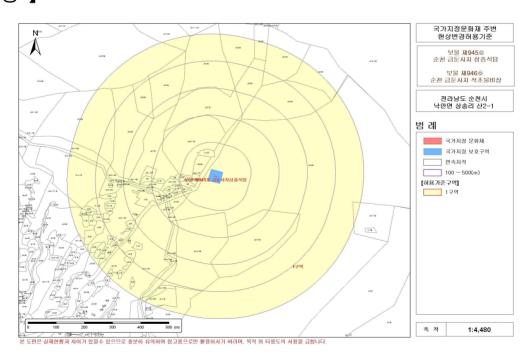
▮ ㅁ네 ㅛ	(01)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 ਹ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 "
게 기선	○원지형 보존		
제1구역	- 기존범위 내 개축·재축 가능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어	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역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	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	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m²	초과 건
		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n	
	하인 구역에 한함)		
		· -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 , , , , , , , , , , , , , , , , , , ,	설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셔	생하는 경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0 12 0
			- 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cdot$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 "
o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	·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여	ll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7	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o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L	H에서 개·보수 가능	
o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 , ,	330m² ネ
	•	
•		10 12111
, , = , , , = -,	게지 기기(시 - 기부 게지 - 취계 바계	드/ 이제
		<b>万</b> ), 전액
O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	판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농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ㅇ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u,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띠	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을 포함.
	평지붕  기별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의  조정토록 함.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  () 단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변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여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정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기별심의  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가 조정토록 함.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그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그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자

### ■ 보물 제945호 "순천 금둔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946호 "순천 금둔사지 석조불비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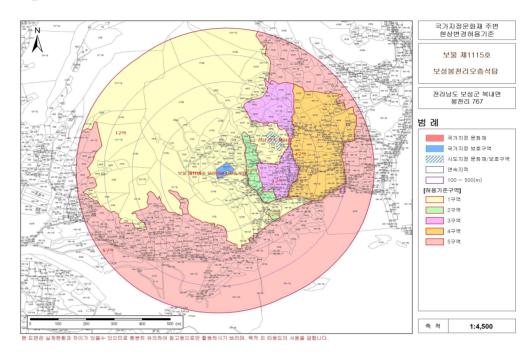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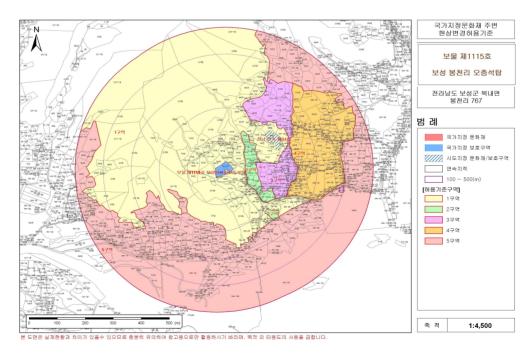
	• - •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끄
제1구역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1.0/1		
구 분	허용기준		비고
, E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H 1-12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이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m'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웅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 보물 제1115호 "보성 봉천리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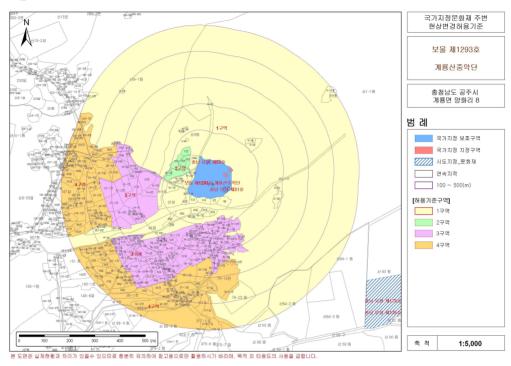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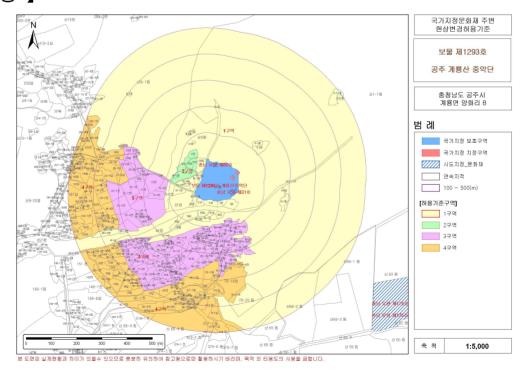
<u> </u>	도 (경소) 1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 ਜਦ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비포
제1구역	○원지형 보존 - 기존 범위내 개축	가능	
제2구역	○최고높이 5m (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터파기시 관계기관 입회
제3구역	○최고높이 8m (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 14m (4층) 이하	ㅇ최고높이 18m(4층) 이하	
제5구역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 ]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공통사항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  이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수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건물은 개별심의.   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경사지붕 12m(2층) 이  색, 밤색 등). 원색 계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 , 옹벽이 발생하는 경 법에 따름)

구 분	허용기준		비고	
I T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 412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터파기시 관계기관 입회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구역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	·[경 허용기준을 재조정	
	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나스 게기 기기(세 . 기비 게기 = 국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호	1색, 맘색 등). 원색 계 <sub> </sub>	
공통사항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		서 드디 미 치디 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ዕህል 비계리는 거ዕ	
		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뉴사안 것을 포함.	
	O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의 신설 및 확상은 개벌심의		

#### ■ 보물 제1293호 "공주 계룡산 중악단"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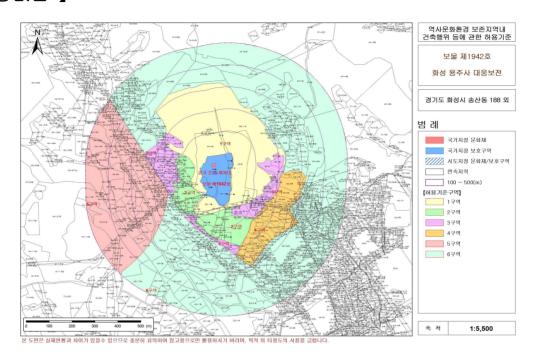


구 분	) 허 <del>용</del>	기 준	비고
' "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 "
제1구역	○원지형 보존		•
제2구역	_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14m(4층) 이하	ㅇ최고높이 18m(4층) 이하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	격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m² :	초과 건물
	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 , _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식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	원색 계열
2505	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를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
		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
	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그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		,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l 및 확장은 개별심의	

구 분	허용기	-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25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2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등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스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이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에서 개·보수 가능 비별 심의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도 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지 않는 재료 권장. 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 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백 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 당,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봉 12m 이하인 택 등). 원색 계열 물 및 식물 관련  이 발생하는 경 특법에 따름)

#### ■ 보물 제1942호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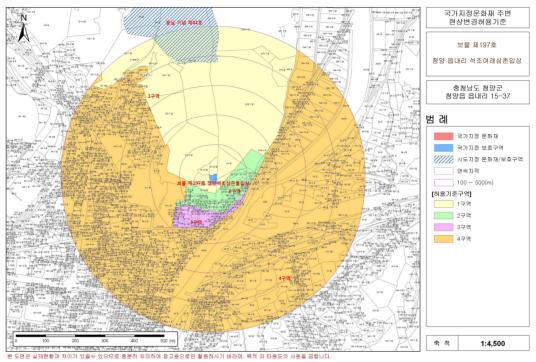
	立 (8年) 1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1 12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미끄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사적 제206호 "화성 융릉과 건릉" 허용	용기준에 따라 처리	
제6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7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개별 심의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5  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부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듬 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ul><li>] 구역에 한함)</li><li>] 나색 등). 원색 계</li><li>물 및 식물 관련</li><li>발생하는 경우는</li><li>름)</li></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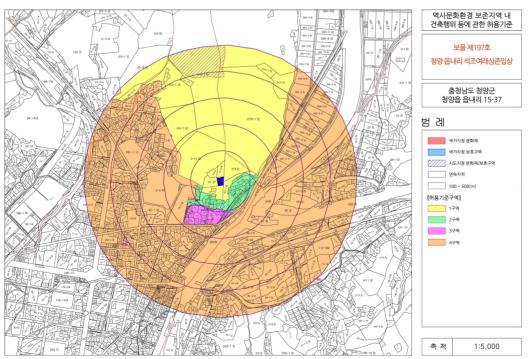
구 분	허용기준		비고
1 12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山元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ㅇ사적 제206호 "화성 융릉과 건릉" 허-	용기준에 따라 처리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		
제6구역		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	
		: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 이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을 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이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개별 심의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역 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본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득 하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인 구역에 한함) 남색 등). 원색 계 물 및 식물 관련 발생하는 경우는 름)

#### [붙임 4] 허용기준 조정 4건

■ 보물 제197호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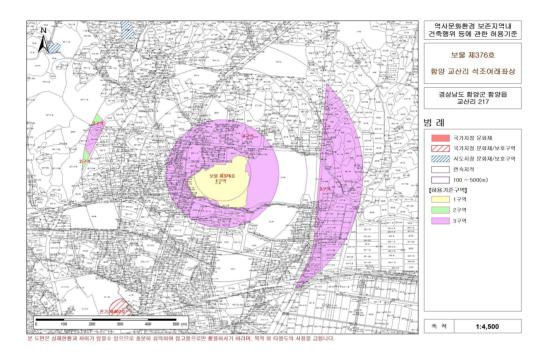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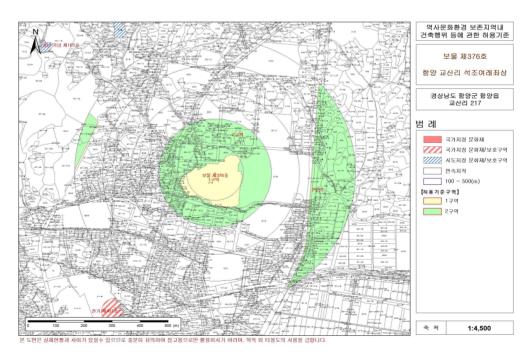
7 H	허 용	,ı] <b>-</b>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신축불가, 기존건축물 개·보수, 재축 혀	<del>기용</del>			
제2구역	○최고높이 11m(3층) 이하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18m(5층) 이하 ○최고높이 21m(5층) 이하				
제4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 범례 표 (변경) 】

7 1	허 용	기 준	11 —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18m 이하	ㅇ최고높이 21m 이하	
제4구역		등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물	
공통사항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개별 심의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시 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으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인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나지붕 12m 택 등). 원색 물 및 식물 ] 발생하는 법에 따름)

# ■ 보물 제376호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 【 범례 표(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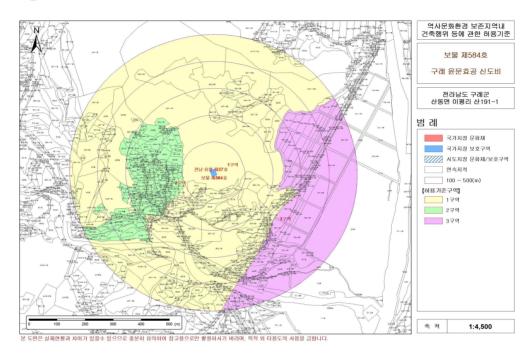
	(S=) 1				
구 분	허용기준				
। स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	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양검토구역 내에	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	토록 함.		
	ㅇ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154호 힘	l양 상림, 제407호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및 시도지		
제3구역	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225호 함양 향	교, 기념물 제 165호 세종왕자한낭군묘역	) 허용기준		
	을 따름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	.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m² 초과				
	건물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				
	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공통사항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u> </u>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	<u></u> 난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및	및 식물 관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성	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	]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	<u>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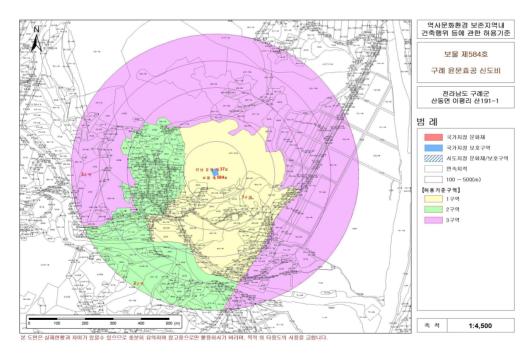
# 【 범례 표(변경) 】

지1구역 이개별심의  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이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m' 최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봉 8m, 경사지봉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석 개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용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전체로 최고통이는 일단 개단된 소간기탕 마른 작시한 등 기단이와 일시한 건요 또한			
제1구역  이개별심의	구 분	, , , =	비고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전 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m' 최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석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용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제1구역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석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웅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병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투○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3○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지붕 12m 등). 원색 물 및 식물 발생하는 법에 따름)

## ■ 보물 제584호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당 초 】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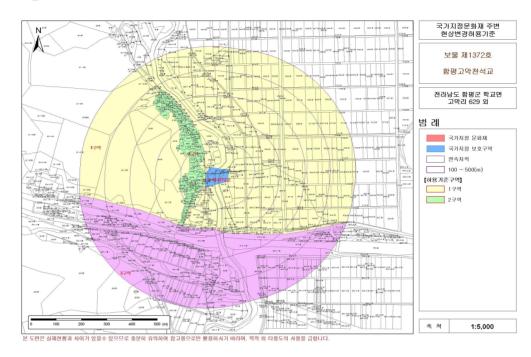
	L (0 T) 1				
   구 분	허용기준				
। ਹ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어	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역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鴠	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기	H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m²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	]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여	이하인 구역		
	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공통사항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0 2/18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	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	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	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	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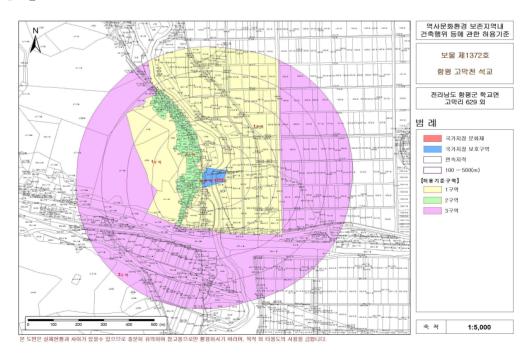
# 【 범례 표 (당초) 】

7. 13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세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빙	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측	준을 재조정		
	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1	내에서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가	]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				
	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고토기치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	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	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	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	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	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보물 제1372호 "함평 고막천 석교"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당 초 】





## 【 범례 표 (당초) 】

	(0-1/1				
- 구 분	허 용	기 준	ิษา		
⊤ ਦ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	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	형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5	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 -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lm² 초과 건		
		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퉁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생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내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ll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_ 0 ,		
		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털	발생하는 경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				
	, , , , , , , , , , , , , , , , , , , ,				

# 【 범례 표 (변경) 】

7. 13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세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	·자치단체		
711317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이	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フ	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니	H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	330m'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	]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0.24.8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여	기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의	괴,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	자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정	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	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0-12-013

## 13. 양산 통도사 유물 수장고 건립공사 설계 재검토

#### 가. 제안사항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산 통도사 유물 수장고 건립 설계(안)을 재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20년도 「보물 제738호 문수사리보살최상승무생계경」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물 수장고 건립 설계(안)의 적정성을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검토결과(2020.10.15.): 보류
    - 소위원회 설계자문 후 위원회 재검토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양산시장
- (2) 대상문화재 : 문수사리보살최상승무생계경
- ㅇ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38번지, 통도사
- ㅇ 지 정 일 : 1982. 11. 9.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609-11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부터 570m
  - ㅇ 사업내용 : 양산 통도사 수장고 건립
    - 건축면적(연면적): 2,637.72m²(3,638.18m²)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지하1~지상1층)

- 건축양식 / 층고 : 자연지형을 반영한 랜드 스케이프 양식 / 9m
- 참고사항: 기존 불법건축물 철거 후 해당 부지에 조성
  - \* 불법건축물 현황 : 된장판매소(137.72m²). 운영사무실(38.31m²)
- ㅇ 건립 예정 수장고 문화재 이전 개요
  - 통도사 소장 문화재 현황
    - · 지정문화재 : 80건 1,090점(국보 1건, 보물 26건, 시도지정 40건, 문화재 자료 13건)
    - ·비지정문화재 : 지류문화재 28,982점 등 38,916점
  - 건립 예정 수장고 이전 문화재 : 불화, 목판류 등 1.470점

#### 라. 소위원회 자문 의견(2020.10.28. /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 ㅇ 수장고의 습기. 결로 등 방지를 위해 Drv Area의 적정폭을 검토하도록 함.
- ㅇ 지붕 분절 등을 통해 천창을 고려하여 통기와 채광을 보완토록 함.
- 조경의 식재를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밀식토록 함이 좋겠음.
- 개방형 수장고임을 고려하여 동선체계와 코어계획을 수정·보완함이 좋겠음.

#### 마. 의결사항

- ㅇ 원안가결
-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 안건번호 건축 2020-12-014

## 14.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주변 선원 및 법검당 리모델링 설계 검토

#### 가. 제안사항

'2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원 속초시 소재 보물제1981호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주변 선원 및 법검당 리모델링 설계 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2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원 속초시 소재 보물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주변 선원 및 법검당 리모델링 설계 안과 관련 검토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 ㅇ 소 재 지 : 강원 속초시 설악산로 1137
  - ㅇ 지 정 일 : 2018. 06. 04.
- (2) 사업내용
  - ㅇ 사업지침 :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신흥사 선원 및 법검당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실시한다.
    - 증개축이 아닌 기존 건물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실시한다.
  - 사업예산: 200,000천원(국비 140,000천원, 지방비 60,000천원)
    - ※ '21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사전통지 : 신흥사 선원 및 법검당 리모델링(1차) 1,000,000천원(국비 700,000천원, 지방비 300,000천원)
  - ㅇ 사업위치 : 강원 속초시 설악산로 1137

## ㅇ 세부내용

구분		기존	리모델링 안	비고		
	규모	정면11칸, 측면6칸, ㄷ자	좌동			
	건축면적 /연면적	396.0 m²/396.0 m²	좌동			
	구조	한식목구조	좌동			
선원	최고높이 /층수	10.29m/지상1층	좌동			
	지붕·처마	팔작지붕, 1출목 2익공·겹처마	좌동			
	기타	기존 마루 철거, 정면 온돌마루설치 목재차폐시설(L=70.8m, 무문관 기능) 설치 방구조 변경에 따른 창호 변경 등				
	규모	정면7칸, 측면3칸, 一자 좌동				
	건축면적 /연면적	173.21 m²/346.42 m²	좌동			
법	구조	지하1층-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1층-한식목구조	좌동			
검당	최고높이 /층수	11.66m/지하1층·지상1층	좌동			
	지붕·처마	맞배지붕, 초익공·겹처마	좌동			
	기타	석재난간철거 후 목재난 지하층 퇴칸 회랑 및 우 방구조 변경에 따른 창호	물반자 신설			

# 라. 의결사항

- ㅇ 보류
  - 현황 파악 필요
-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보류 10명

##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0-12-015

## 1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 가. 보고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보물 제537호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주변 온양 소로 1-451호 확포장 공사 등 허가신청 26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원안가결	· 19건
소 계		26건	조건부기	·결 4건
			부결:	3건
		□ 온양 소로1-451호 확포장공사		
		ㅇ 위치 : 아산시 읍내동 349-7번지 일원		
		* 제4구역(문화재에서 372m 이격)		
	충남 아산 · (ㅇㅇㅇ)	ㅇ 내용 : 도로 확포장공사		
		- 규모 : 소로1-451호선(L=134m, B=10m)		
		- 토공 : 흙깎기 343㎡, 흙쌓기 543㎡,		
보물		순성토 333㎡		
		- 배수공	원안가결	'20.10.27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우수관로(D600) 128m		
0 2011		· 우수받이(410X510X940) 12EA		
		· 보차도경계석(200X250) 236m		
		·도로경계선(150X150) 112m		
		- 포장공		
		· 아스팔트 포장 1,124㎡, 보조기층 419㎡,		
		도로포장 419㎡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161호 강화 정수사 법당	인천 강화 (ㅇㅇㅇ)	<ul> <li>위치</li> <li>* 제35</li> <li>- 필지</li> <li>- 작업</li> <li>- 제거</li> <li>- 제거</li> </ul>	변지저감 숲가꾸기 : 강화군 화도면 외 3필지 구역(보호구역에서 : 숲가꾸기 작업 면적: 95,251㎡ 면적(구역내): 33 본수: 728본 수종: 신갈, 기 아까시, 리기다 등 성: 산불, 병충히	원안가결	'20.10.27	
보물 제79호 홍천 희망리 삼층석탑 보물 제540호 홍천 괘석리 사사자 삼층석탑	강원 홍천 (ㅇㅇ)	<ul> <li>위치</li> <li>* 제2,</li> <li>아사업니</li> <li>무적</li> <li>구분</li> <li>보강토</li> <li>토공</li> <li>도포장</li> <li>* '20년</li> </ul>	외 4필지 3구역(보호구역여 내용	사 희망리 105번지	원안가결	'20.10.2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국보 제53호 구례 연곡사 동	전남 구례 (ㅇㅇ)	□ 연곡사 심우암 내 요사채 건립 및 석축정비 ○ 위치: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1026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2.6m, 승탑에서 197m 이격) * '17년 제3차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 부결 - 위치 부적절 등 역사문화환경 저해 * '17년 5차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17년 6차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 조건부 가결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반영 선행 * '18.01.31. 자체회의 결과: 조건부허가 - 지표조사결과에 따라 발굴조사 실시 ○ 내용: 요사채 1동 건립 및 석축정비 - 요사채 • 연면적: 106㎡ • 건축구조: 한식목구조, 팔작지붕 • 충수 및 높이: 지상1층 / 7.39m - 석축정비 • 지반정비: 마사토 포장 A=1,980㎡ • 석축정비: L=223m, H=0.5~4.2m • 배수시설: PE우수관, 집수정 및 오·우수	원안가결	<b>'</b> 20.10.27
보물 제172호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경북 문경 (ㅇㅇㅇ)	<ul> <li>□ 봉암사 안길 포장공사</li> <li>○ 위치: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625 외</li> <li>* 제1구역(문화재로부터 36m 이격)</li> <li>○ 사업내용</li> <li>- 황토포장 및 배수로 설치(A=385m²)</li> <li>· 황토포장(T=20cm) 320.6m²,</li> <li>수로관(300X300) 138m</li> <li>· 트렌치측구(300X300) 6m, 우수집수정 7EA</li> </ul>	원안가결	'20.10.2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610호 영양 현리 삼층석탑 및 보물 제2069호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	경북 영양 (ㅇㅇㅇ)	□ 지방도920호선(현3리) 인도설치공사 ○ 위치: 영양군 영양읍 현리 401 일원 * 제1·2구역(문화재에서 169m 이격) ○ 내용: 도로 확포장공사(B=5~6m)	원안가결	'20.10.27
보물 제610호 영양 현리 삼층석탑 및 보물 제2069호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	경북 영양 (ㅇㅇㅇ)	□ 창고시설 증축 ○ 위치 :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42-1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60m 이격) ○ 내용 : 창고시설 증축 - 대지면적 : 5,656.00㎡ - 건축면적/연면적 : 1,062.23㎡/1,062.23㎡ - 구조 : 1층/일반철골구조/기타지붕 - 최고높이 : 6.90m - 외장마감 • 지붕 : THK-75 지붕용판넬(짙은회색) • 벽체 : THK-75 벽체용판넬(갈색 우드톤색상)/코너부분 후레싱(짙은회색) • 문(주출입구) : 1층(75mm 행거도어/THK-1.2mm 스틸 회색 갑종 방화문)	원안가결	'20.10.27
보물 제272호 장수향교 대성전	전북 장수 (ㅇㅇㅇ)	□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축물 수리 ○ 위치: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1026 * 보호구역 내 ○ 내용: (명륜당, 동재, 서재, 사마재) 내부수리 - 명륜당: 장판지 교체 - 동재, 서재, 사마재: 벽지, 천장지, 장판지 교체	원안가결	'20.10.2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1570호 청송 대전사 보광전	경북 청송 ( O O O )	□ 인법당, 부속건물 보수 및 주변 정비(변경 허가) ○ 위치 : 청송군 주왕산면 상의리 466 일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30m 이격) ○ 사업내용		'20.10.27
보물 제1570호 청송 대전사 보광전	경북 청송 (ㅇㅇㅇ)	<ul> <li>□ 가을철 성수기 사찰 판매점 운영</li> <li>○ 위치 : 청송군 주왕산면 공원길 226</li> <li>*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0m 이격)</li> <li>○ 내용 : 목조 조립식 가건물 임시 운영</li> <li>- 입장료 수입감소로 인한 사찰재원확보를 위한 판매점 운영</li> <li>· 기간: 2020.10.24.~11.15.(3주간)</li> </ul>	원안가결	'20.10.2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1656호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경북 성주 (ㅇㅇㅇ)	□ 농막용 가설건축물 축조 ○ 위치: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362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00m, 문화재로 부터 260m 이격) ○ 사업내용 - 18㎡(3X6) 컨테이너 설치	원안가결	'20.11.09
보물 제100호 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 입상 및 보물 제101호 당진 안국사지 석탑	충남 당진 (ㅇㅇㅇ)	□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 위치: 당진시 정미면 수당리 690-39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20m 이격) ○ 내용: 단독주택 부지 조성 토목공사 - 대지면적: 350m² - 절토/성토: 577.2m³/345.2m³	원안가결	'20.11.09
보물 제605호 고령 장기리 암각화	경북 고령 (ㅇㅇㅇ)	□ 문화관광안내소 설치 ○ 위치: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리512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65m 이격) ○ 내용: 관광안내소 설치 - 구조 및 면적: 콘테이너 / 6.6㎡ - 용도: 안내부스 ※ 공원부지 조성 관련 '16년 10차 건축분과 심의 결과: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원안가결	'20.11.09
보물 제488호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경기 안성 (ㅇㅇㅇ)	<ul> <li>□ 농지 원상회복 및 유실수 식재</li> <li>○ 위치: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759-2</li> <li>*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54m, 문화재로 부터 103m 이격)</li> <li>○ 내용: 농지 원상회복 및 유실수 식재</li> <li>- 부지면적: 955㎡</li> <li>- 주요내용: 수풀 및 잡목 제거, 유실수 식재</li> </ul>	원안가결	'20.11.09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143호 서산 개심사 대응전	충남 서산	□ 서산 개심사 명부전(충남 문화재자료 제194호) 보수공사 ○ 위치 :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개심사 명부전 전체 해체보수 및 임시가설물 설치 - 명부전 해체 보수 ㆍ면적 : 74.66㎡(22.58평) ㆍ평면 : 정면 3칸, 측면 3칸 ㆍ기단 : 화강석 2벌대기단 ㆍ주초석 : 자연석 주초석 ㆍ구조 : 무고주 5량가구 도리 ㆍ지붕 : 맞배지붕, 한식흙기와 중와 - 임시법당 ㆍ면적 : 75.60㎡(22.87평) ㆍ구조 : 조립식 샌드위치패널 ㆍ이전대상 : 불단 및 지장보살상 등 23개 - 가설콘테이너 2동 설치 ㆍ가설사무소, 창고 용도	원안가결	'20.11.09
보물 제565호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 불좌상	경기 평택 (ㅇㅇ)	□ 숲가꾸기 산림사업 ○ 위치 :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산209-1 외 2필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60m 이격) ○ 내용 : 숲가꾸기 작업 1식(골라베기) - 필지면적 : 6,191㎡ - 벌채수량 : 2.4㎡(상수리나무 3본, 리기다 소나무 3본, 아까시 등 6본, 기타잡목 다수) * 전체 입목의 5% 이내 - 벌채대상 : 잡목, 고사목, 불량목, 피압목 등	원안가결	'20.11.09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822호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경기 이천 (000)	□ 영월암 삼성각 보수 및 주변정비(변경 허가)  ○ 위치 : 이천시 관고동 438번지  * 보호구역, 제1구역(문화재에서 40m 이격)  * '20년 8차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 결과  : 조건부가결  - 배면 암반으로 인한 건물 영향 없도록 보완, 검토  ○ 변경내용 : 수각 신축, 배수로 정비  - 수각신축  • 면적 : 4.41㎡  • 구조 : 민도리, 맞배지붕, 1칸×1칸  - 배수로 정비  • 삼성각 우측 배수로 석축정비  • 나동m, H=0.3m  * 기 허가내용  <삼성각 지붕보수>  - 삼성각 전목이상 해체·설치, 기와 해체·번와 (기와 90%교체, 연목, 부연 30% 교체)  <삼성각 주변 석축 및 바닥 정비>  - 삼성각 주변 바닥공사 : 기존 견치석 석축한단 해체((H:200mm)  - 삼성각 주면 화강석 계단 : 해체 후 설치  - 삼성각 주면 화강석 계단 : 해체 후 설치  - 삼성각 주면 자연석 석축(H:0.5~3.8m)  쌓기 : L=33m  - 삼성각 정면 암반주위 자연석 석축(H:0.5  ~0.9m) 쌓기 : L=24m  - 삼성각 배면 굴뚝 우측 자연석 석축 (H:0.5)  ~0.9m) 쌓기 : L=3.2m  <안심당 좌측 석축 정비>  - 신규 자연석 석축(H:1.2m) 쌓기 : L=45.8m (기존 석축에 연결하여 석축 설치)	원안가결	'20.11.09
국보 제323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	충남 논산 (ㅇㅇㅇ)	<ul> <li>□ 공중화장실 후면 옹벽 보강공사</li> <li>○ 위치 : 논산시 내동 산1-1</li> <li>* 제5구역(문화재에서 160m 이격)</li> <li>○ 사업내용 : 폭우에 따른 토사유실로 옹벽 보강</li> <li>- 옹벽설치(L=40m, H=4m)</li> </ul>	원안가결	'20.11.09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823호 안성 석남사 영산전	경기 안성 (ㅇㅇㅇ)	<ul> <li>□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li> <li>○ 위치: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산20번지</li> <li>*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435m 이격)</li> <li>○ 내용: 목재문화체험장 조성</li> <li>- (부지) 5,175㎡ (체험장) 399㎡</li> <li>(건물높이) 6.5m (주차장) 786㎡</li> <li>* 부지조성을 위한 절토로 높이 5m 석축 발생</li> </ul>	원안가결	'20.11.09
보물 제435호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경기 안성 (ㅇㅇㅇ)	□ 비닐하우스 및 가설건축물 신축 ○ 위치: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번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53m 이격) * 인근 시도유형문화재 - 유형 제78호 안성죽산리삼층석탑(14.5m) - 기념물 제189호 안성봉업사지(277m) ○ 내용: 비닐하우스 및 가설건축물 신축 - 건축면적 (비닐하우스) 70.29㎡ / 높이 4.3m (가설건축물) 89.25㎡ / 높이 2.6m - 용도: 비닐하우스(버섯사), 컨테이너 2동	조건부가결 (도문화재 위원회 결과에 따라 시행)	'20.10.27
보물 제191호 강릉 보현사 당원대사탑 및 보물 제192호 강릉 보현사 당원대사탑비	강원 강릉 (ㅇㅇㅇ)	<ul> <li>□ 보현사 수각 신축</li> <li>○ 위치: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산542</li> <li>*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45m 이격)</li> <li>○ 사업내용</li> <li>- 목적: 진입부 음수대를 우수 등 오염으로부터 보호</li> <li>- 경비: 30,000천원(자부담)</li> <li>- 수각 신축</li> <li>·건축면적: 5.76㎡</li> <li>·구조/양식: 한식목구조/맞배지붕</li> <li>·층수: 지상1층(최고높이 4.77m)</li> </ul>	조건부가결 (수각 양식 간소화 필요)	'20.10.2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162호 청양 장곡사 상 대응전 보물 제181호 청양 장곡사 하 대응전	충남 청양 (ㅇㅇㅇ)	□ 장곡사 설선당(충남 유형문화재 제151호) 해체 보수 및 봉향각 보수공사 ○ 위치 :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15 외 * 보호구역 내 ○ 내용 - 설선당 해체 보수 · 기와 전체 해체 후 신재 10% 보충 · 훼손 기단 해체 후 재설치, · 우측 굴뚝 벽체 해체 및 재설치 · 산자이상 해체하되, 훼손 우려있는 보 및 도리 상태확인을 위하여 일부 구간 장·단연 각 총 78본 중 각27본 연목 해체 -석축배수로 보수 · 배부름 현상 발생한 설선당 우측면 석축과 계단 해체 보수 - 봉향각 보수(임시종무소로 사용 중) · 외부 기단 바닥 해체 후 생석회 다짐 · 화장실 내부 리모델링 · 내부 벽지, 장판 등 수장공사, 창호교체 등	조건부가결 (시공시 하 대응전 등 문화재 안전조치 수립 후 진)	'20.10.2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국보 제54호 구례 연곡사 북 숭탑	전남 구례	□ 공중화장실 및 안전난간 설치 ○ 위치: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산54-1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72m, 삼층석탑에서 113m 이격) ○ 내용 - 목재난간: L=80m(W1.5m×H1.1m) * '19년 13차 자체회의 결과: 원안가결 ⇒ 안전난간 264m 설치 - 모바일화장실 설치 * 나라장터 조립식 가설건축물 · 골조(일반구조용 각형강관) · 외장(한식기와, 방수목재, 석재타일) · 규격: L(8.3m)×W(3.2m)×H(5.2m) · 기초공사: L(9.2m)×W(4.2m)×D(0.2m) · 토공사: 배수로 40m(400mm) · 정화조 설치: 7m³/일	조건부가결 (노후된 기존 화장실 철거)	'20.11.09
국보 제304호 여수 진남관	전남 여수 (ㅇㅇㅇ)	□ 여수 진남관 공영주차장 신축 ○ 위치: 여수시 중앙동 511외 15필지 *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7m, 문화재에서 43m 이격) ○ 내용 - 부지면적: 2,782㎡ - 주차대수: 208대 - 건축면적(연면적): 2,145.89㎡(6,437.67㎡) - 층수 및 최고높이: 지상3층 / 14.7m	부결 (역사문화 경관 저해)	'20.11.09
보물 제571호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전남 여수 (ㅇㅇㅇ)	□ 고소동 공영주차장 신축 ○ 위치: 여수시 고소동 636-4번지 * 보호구역, 제3구역(보호구역에서 0m, 문화재에서 22m 이격) ○ 내용 - 부지면적: 2,068㎡ - 주차대수: 129대 - 건축면적(연면적): 1,212.4㎡(3,637.2㎡) - 층수 및 최고높이: 지상3층 / 14.8m	부결 (역사문화 경관 저해)	'20.11.09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221호 영주 가흥동 마애여래 삼존상 및 여래좌상	경북 영주 (ㅇㅇㅇ)	□ 영주 택지 가흥동주공아파트 골목 아스콘 덧씌우기 및 정비공사 ○ 위치 : 영주시 가흥동 264-17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 인접),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50m 이격) ○ 사업내용 - 아스콘덧씌우기(T=0.05m, B=4.3~7.5m) : L=160.0m, A=954.0m² - 아스콘포장 : A=216.0m²	부결 (역사문화 환경 저해)	'20.11.09

# 다. 의결사항

- ㅇ 원안접수
-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접수 10명